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해설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 및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해설집



목차

I. 표준계약서 개론	009
1. 표준계약서의 개요	010
가. 계약의 중요성	010
나. 표준계약서의 보급	010
다. 표준계약서의 활용	011
2. 개정 표준계약서 내용	018
가. 주요 제·개정 내용	018
나. 주요 용어 해설	019
II. 표준계약서 해설	023
1. 만화 분야 출판권 설정 계약서	024
2. 만화 분야 전자책 발행 계약서	040
3. 만화 분야 웹툰 연재계약서	056
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084
5. 만화 분야 공동 저작 계약서	098
6. 만화 분야 기획만화 계약서	108
7. 만화 분야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124
8. 만화 분야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136

III. 저작권 개론	149
1. 저작권의 개념	150
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150
1) 저작권의 의의	150
2) 저작물	151
2. 저작물의 예시	154
가. 어문저작물	154
나. 음악저작물	156
다. 연극저작물	156
라. 미술저작물	156
마. 건축저작물	159
바. 사진저작물	159
사. 영상저작물	161
아. 도형저작물	161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61
3. 영상저작물 특례	164
4. 저작자	166

5. 저작권의 내용	170
가. 저작인격권	170
나. 저작재산권	172
1) 복제권	172
2) 공연권	172
3) 공중송신권	172
4) 전시권	173
5) 배포권	173
6) 대여권	174
7) 2차적저작물작성권	174
6.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176
가. 배타적발행권	176
나. 출판권	176
7. 저작인접권	177
8.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78
9.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행사, 소멸	179
10. 저작권의 등록	180
11.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	181
가. 저작권신탁관리업	181
나. 저작권대리중개업	181
12. 저작재산권 제한	182
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186
가. 저작권 침해	186
나. 조정 및 감정	191
다. 민사상 구제수단	191
라. 형사상 구제수단	193

1.

표준계약서 개론

1. 표준계약서의 개요

가. 계약의 중요성

사적자치의 원칙¹⁾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일방이 거래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 계약은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하였다면 이를 추후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참고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표준계약서의 보급

「예술인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1항은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²⁾

만화 분야의 경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³⁾

실천 Tip 서면계약 체결 의무

그동안 문화예술계 관행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서면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주고받아야 한다.

서면계약에는 ① 계약금액, 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④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⑤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⑥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제3항).

한편, 2020년 6월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에 대해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약서 명시 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제4항,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제5조 별표2 참조).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유형에 대해 표준 계약 양식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다. 특히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표준계약서 내용이 해당 분야와 직군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 표준계약서의 활용

사적자치의 원칙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하여 표준계약서를 미리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표준계약서는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경우들을 예상하고 이에 맞춰 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표준계약서를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확정된 내용의 계약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계약 체결에 있어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즉,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쟁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표준계약서의 종류는 전형적인 경우를 예상해 임의로 나눈 것이므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분류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서 다루지 않은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항이 있는지 찬찬히 찾아보고, 찾아낸 조항의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다르다면 어떻게, 왜 다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유사 조항이 아예 없다면 왜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계약서에 필요한 각 조항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모호한 표현은 없는지, 계약서 내용이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돼 있지는 않은지, 계약서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가령 계약기간이나 대금 지급의 조건, 해지나 해제권이 발생하는 조건 등)은 어떠한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물론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님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계약 상대방을 위해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하나의 조항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대신 다른 조항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기도 한다. 다만 수정하거나 변경한 해당 계약서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신중히 계약해야만 한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있다면 체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체결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

즉석에서 계약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설명의무 및 계약서 전문 최초 확인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검토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이러한 계약서 내용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 헬프데스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등에서 기초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협·단체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1)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말한다.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실전 Tip 표준계약서의 구조

표준계약서를 크게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다.

- 제목, 목적, 정의
-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 대가, 정산, 비용 등
- 교정 및 편집, 원고의 반환 등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손해배상
- 성희롱 등의 금지, 예술인고용보험
- 비밀유지 조항
- 분쟁해결, 설명의무
- 일자 및 서명 날인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제목을 쓰고 계약 체결 당사자와 저작물(작품)을 표시하여 특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로는 계약의 목적과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定意) 조항으로 이어진다. 정의 조항은 대체로 저작권법상의 정의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저작권법에 규정이 없는 것(예컨대 미니멈개런티(MG), 매출, 수익, 비용 등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는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과 정의 조항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과 용어 정의 부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이후의 조항에서 등장한다면 그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편의상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연장 또는 자동 갱신되는 조항을 둘 수도 있으나,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령 작가는 원고를 줄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해 대금과 정산서를 받을 권리가 있음), 대가, 정산, 비용 등 관련(정산 관련 산정 근거 자료 제공 의무 등), 계약 내용의 변경과 해지 또는 해제 및 손해배상 등, 성희롱 등의 금지와 예술인고용보험, 비밀유지 조항(예외 사유가 예전보다 넓게 규정됨), 분쟁 해결,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에 계약 일자 및 서명 날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각 부분 해설서에서 살펴본다.

표준계약서에 불필요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실무상 표준계약서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계약서 중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규정에는 “핵심” 표시를 추가하였다.

“핵심” 표시가 추가된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규정, 계약의 종료·해지·해제 등과 관련된 규정 등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또한 불공정성이 문제 될 여지가 큰 사안에 대비하는 규정에도 “핵심” 표시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을 검토할 때 “핵심”라는 표시가 있는 조항들은 특히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표준계약서와 달리 2024년에 고시된 제·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다수의 박스 표시가 있다. 이 박스는 현장에서 중요하게 참고되어야 할 경우에 삽입되었다. 따라서 박스로 처리된 부분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

괄호 안에 슬래시(/)로 구별된 내용은 선택사항이다. 가령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9조 제6항에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합의한다’가 될 수도 있고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전 Tip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대처법(작가 관점)

1. 기본 원칙

계약은 쉽게 말해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작가는 상대방에게 만화를 출판할 권리를 주고, 대신 상대방은 내게 돈을 주는 계약을 생각해보면, 작가는 계약으로 만화를 제공할 의무와 돈을 받을 권리를, 상대방은 계약으로 만화를 출판할 권리와 돈을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계약이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계약에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이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작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상대방과 합의할 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작가가 이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작가가 이 계약으로 무슨 권리를 취득하는지, 대신 작가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계약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를 파산시킬 수도, 더 이상 작가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작가가 지는 부담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사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계약이 체결될 때는 상대방과 작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만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약서가 중요해지는 때는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이다. 더 이상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계약서이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에 대비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렇게 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될 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계약의 해제, 해지, 손해배상, 계약의 종료 등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해제 등의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살펴보고,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은 똥똥그러서 추상적으로 체결하면 안 된다. 보통 추상적이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계약서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최대한 쉽고 간단한 것이 좋다. 만화계약의 경우라면, 이 계약이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인지, 일부인지 전부인지, 아니면 저작재산권 일부를 기한을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지,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도 주는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정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동료나 선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단체에 법률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2. 계약서의 작성

계약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계약서는 이 약속의 내용이 서면에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계약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계약서 역시 원칙적으로는 매 계약마다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주 체결하는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표준계약서니, 약관이니 하는 형태로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고,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된 단체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의 종류마다 감안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제시된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계약서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 계약이 무슨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 계약이 출판권 설정 계약인지, 웹툰 연재계약인지 등이 계약서 내에 명시되면, 이후 계약 내용의 해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 해석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의 목적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과 같이 계약서의 제목으로 명시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아예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 ○○○이 출판사 주식회사 ○○○에게 ○○○작품에 대한 출판권을 수여할 목적으로 체결된다”라는 식으로, 계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적어주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지만, 계약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둘째, 나의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판계약이라면, 작가가 언제까지 어떤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하여 출판할 수 있게 할지, 그리고 상대방은 언제까지 얼마의 액수를 어떤 방식으로 작가에게 지급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계약서 내에 쌍방의 계약상 채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계약에 필요한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판권에 대한 계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양도 같은 내용이 기재될 이유가 없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그 외 권리에 대한 기재는, 자칫 잘못하면 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권리를 넘겨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넷째, 계약의 해제, 종료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을 해제할 때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지를 규정하는 것이나, 이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법률 지식을 요구하므로, 관계 정리에 관한 규정은 표준계약서 등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계약의 자동 연장(갱신) 규정은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결과를 불러오므로, 자동 연장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표준계약서에 “핵심”으로 표시된 조항들은 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표준계약서에 “핵심”으로 표시된 조항들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 판례 1 - 자동 연장조항과 계약 해지를 제한한 계약서(약관) 조항을 불공정조항으로 본 사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의 신탁계약 약관은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10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제3조),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제18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첫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7. 5. 15. 그 기간이 2007. 5. 15.까지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할 것이다(피고가 2002. 1. 14. 자동 연장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10년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면서 그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2. 5. 15.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치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피고에게 관리를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사용료 등을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약관에 의하여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항에서 해지요건을 더욱 가중하는 이유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피고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이른바 ‘자익신탁’에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위탁자가 보유하는 해지의 자유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한 약관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12나57455)

3.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행되면 가장 좋겠지만, 불행히도 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한다.

첫째, 누가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서 내에 쌍방의 계약상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다.

둘째,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나도 계약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으니 나도 위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나도 계약을 위반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물론 일정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나도 계약이행을 보류할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이런 “보류할 권리”를 법률 용어로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부르는데, 동시이행의 항변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경우처럼, 상대방의 의무와 나의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때에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케이스마다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만화가가 체결하는 계약은 보통 간단히 물건을 구입하는 수준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계약을 해제·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이 문제 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것은 계약을 해제·해지할지 여부이다.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을 경우,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계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나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계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나아가 나와 상대방은 모두 계약 종료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상대방도 나로부터 받아 간 원고 등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나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물론 “돈을 돌려줄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제한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사실 돈을 돌려주고, 다시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한 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예 계약서에 명시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 내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에 따라 반드시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⁴⁾

넷째,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가능하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역시 법적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그런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나 이행의 독촉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또는 전자우편 등이 주로 쓰인다.

다섯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다.

법원의 판사들, 검찰의 검사들은 내 사건에서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은 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나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고, 나의 말과 상대방의 말 중 어느 쪽이 믿을 만한지 여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안다”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처음부터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둘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말로 한 것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답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하는 것도 좋다.

4) 자세한 내용은 해제·해지에 대한 용어 설명을 참고

특히 녹음의 경우,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내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므로⁵⁾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⁶⁾

여섯째,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의사의 진단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좋다.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이라면 만화영상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를 이용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각 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으면 된다. 무료 또는 큰 비용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겁먹지 말고 우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도록 하자.

5) 나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므로 불법임에 유의한다.

6) 다만 이렇게 녹음한 것은 법적인 방어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 녹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개정 표준계약서 내용

가. 주요 제·개정 내용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표준계약서 6종이 개정되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 2종이 새로 제정되었다.⁷⁾

❖ (개정) ① 출판권 설정 계약서, ② 전자책 발행 계약서, ③ 웹툰 연재계약서, ④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⑤ 공동 저작 계약서, ⑥ 기획만화 계약서

❖ (제정)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등 2차적저작물⁸⁾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가 새로 마련되었다.

이번 제정된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항목 유형을 구체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배 비율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계약 시 참고할 만한 표준계약서가 없었으나, 이번에 표준계약서를 중 처음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의미가 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① (수익배분 조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정산투명성)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포함해 수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웹툰 연재계약서)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매출 내역 등 정산서에 포함

③ (휴재권) 웹툰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을 보장함

④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정함(계약 컷 수 이상 늘어날 시 추가금 지급)

7) 문화체육관광부 ·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13 자 보도자료

8)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①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비밀유지 조건)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 등으로 수사·사법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을 완화함

⑥ (설명 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의 검토 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⑦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관한 조항을 포함

⑧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

⑨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대리중개 계약서’ 변경)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 설정함(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 위탁)

<제정된 2차적저작물작성권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양도의 범위’, ‘대가의 지급’,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나. 용어 해설

[매절]

매절(買切)은 통상 저작재산권 자체를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나, 판례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은 아니며, 원고료로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출판권 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판례1 - 매절계약의 해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위 000 사이의 1987.3.31.자 계약은 저작물 이용 대가를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계약이라 할 것으로, 그 원고료로 일괄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 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

그러나 매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도 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이용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 지분의 100%가 양도되면, 양도인(기존의 저

018 | 표준계약서 해설집

만화(웹툰)계약서 작성 개론 | 019

작재산권자)은 더 이상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며, 양수인이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된다. 즉, 저작재산권자가 바뀐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전부 양도’와 ‘일부 양도’, 이용허락은 ‘독점적’이용허락과 ‘비독점적’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다. ‘ 독점적 이용허락 ’ 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 비독점적 이용허락 ’ 이란 저작재산권자가 복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관련 기본적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중 저작권 4종(전부양도, 일부양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자료공간>표준계약서 참조).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 MG)]

최근 등장한 개념이고 플랫폼 업체마다 내용이 다양하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작가가 최소 수익을 약정하고 이를 선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선인세라고 부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출판계약 시점에 인세의 일부를 미리 받은 후 실제 인세가 발생하면 미리 받은 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계약 방식이 다양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인세와 비슷한 목적으로 등장한 지급금을 통상 미니멈 개런티라고 부른다.

선인세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료 등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작권료의 최소 금액을 보장해주는 대신 저작권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를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미니멈 개런티와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니멈 개런티가 있는지,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제와 해지]

해제와 해지는 모두 계약을 예정보다 일찍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와 해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일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방이 해지 또는 해제를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해제와 해지 모두 계약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지만, 법률 효과 측면에서 보면 ‘해지(解止)’와 ‘해제(解除)’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민법 제550조에서는 ‘해지의 효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과가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곧 ‘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 원인은 계약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도 개별적인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 해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나, 계약에서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처리 문제⁹⁾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한편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⁰⁾ 따라서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9) 예를 들어 그동안 지급된 연재료의 반환 문제나 이미 연재된 작품의 처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 민법 제551조

해제	해지
계약을 체결하였던 시기로 돌아가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서로 계약에 의해 가지게 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제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시점으로부터 장래(미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해지 시점 이전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무)가 있다면 그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해지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원상회복에 있다. 따라서 계약을 과거까지 거슬러 가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제와 해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새로운 합의로서 할 수도 있고(합의해제 또는 해지), 미리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할 수도 있으며(약정해제 또는 해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할 수도 있다(법정해제 또는 해지). 계약서에서 약정해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1990. 3. 27. 선고 89다카14110 판결), 해제권자가 선택하여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조] 어휘 구별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도 계약서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예시)	
~할 수 있다	~한다/~하여야 한다
재량을 주는 규정이다. 즉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선택할 수 있다.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다. 지키지 않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쓰는 ‘~하여야 한다’ 외에도 ‘~한다’ 역시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협의	합의
통상적으로 ‘A는 B와 협의하여 C를 해야 한다.’ 또는 ‘A는 C를 할 때 B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의사표시가 명확히 합치되지 않더라도, C를 위해 협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최종 선택을 누가 할 것인지까지 기재한다면 명확하다.	통상적으로 ‘A는 B와 합의하여 C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A와 B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와 B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C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협의와 합의 중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합의’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협의’로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표준계약서 해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해 상대방(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하여주는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출판권은 저작권법 제63조에 의하여 저작물을 인쇄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발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설정해줄 수 있는 권리이다.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출판권을 설정해주면 상대방은 출판권자가 되어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때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을 보유한 자이다(저작권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로부터 복제·배포권을 양수한 저작재산권자가 이 계약을 통해 출판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본계약서는 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므로 어떤 저작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작품명(제호)으로 특정할 수 있고 아직 제목이 확정 전이라면 ‘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첨] 문서 등을 통해 내용의 시놉시스나 줄거리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여 대상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 계약서는 소설의 웹툰화 등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 원저작물(가령 소설)이 있는 웹툰(=원작에 대해서 2차적저작물)에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원저작물 역시 표시가 필요하다. 원저작물을 표시해야 이 저작물이 어떤 원저작물에 기반한 것인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다르다면 저작자를 표시할 필요도 있다.

핵심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부여하고 ‘출판권자’는 이를 출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8.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9. “완전원고”는 교정·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0.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2조(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그대로 옮겼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9호에는 대상 저작물이 만화 원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원고’ 조항이 별도로 있다. 출판만화를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교정과 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할 것이 기준이 된다.

핵심

제3조 (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제1항에서는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출판권이 설정되며 계약 종료 시 출판권의 존속기간도 만료하도록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63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은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규정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출판권의 존속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합의·결정하면 될 것이다.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연장 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 관계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연장 시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조건은 연장 전이라 할지라도 합의 하에는 변경할 수 있다. 즉 이 조항은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계약 조건을 다시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취지이고 계약 갱신 시에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2항에서는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명시하도록 하여 계약 연장 및 조건 변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증거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에는 연장 기간, 조건, 변경사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라는 문구는 기존 계약의 조항(예: 대가 지급 방식, 저작물 활용 범위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단,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특정 조건(예: 대가, 기간 등)을 변경하기로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서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면도 ‘서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핵심 제4조 (출판권의 설정)

-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비독점적 성격의 권리 설정 시에는 본계약서가 아닌 타 계약서(출판 이용허락계약 등)를 활용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상 출판계약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출판 이용허락계약’과 독점·배타적 준물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출판설정계약’으로 분류된다. 이때, 저작권법 제63조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서 설정되는 출판권이 바로 독점적·배타적 준물권적 권리이며, 전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설정출판권’이라고도 한다. 본계약서 제4조 제1항과 제2항 및 계약서의 전체취지에 따른 출판권이란 ‘설정출판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출판권만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핵심 제5조 (배타적 권리)

-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을 제3자가 발행하는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하고자 할 때는 ‘출판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대상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출판권자 동의가 없다면 개정판이나 증보판도 마찬가지로 출판할 수 없다.

제6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 ① ‘출판권자’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을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출판권도 등록의 대상이다. 출판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사

와 이중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로 하여금 이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출판권 등록은 출판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 대상 저작물을 출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출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출판권 설정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소멸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¹¹⁾ 이때 등록의 말소나 소멸등록은 원칙적으로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등록 말소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조 제3항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해제해서 권리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정했던 기간을 앞당겨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지체없이/___일 이내)에 내에 출판권설정등록을 말소하거나 소멸등록을 해야 한다.

핵심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출판권자’에게 완전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은 저작권자가 완전원고를 인도(=주는 것)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때 저작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원고를 인도하는 기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동의’는 사전에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인도 시기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출판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임의로 완전원고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제2항은 출판권자가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출판물 초판을 발행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63조의2(출판권 설정 계약의 유효기간) 및 제58조 제1항(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의 효과)을 준용한 내용이다. 조항의 취지는 출판권자가 계약 체결 당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출판 및 활용을 약속한 점에 근거한다. 저작권자는 출판을 통해 인지도 상승, 포트폴리오 활용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출판권자가 임의로 출판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면 계약 당시의 기대와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쇄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출판 지연은 저작권자의 수익 발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출판권자가 기한 내 출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기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63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을 경우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다만 본 조항에서는 특약을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공란(‘___개월’)으로 남겨둌으로써 유연하게 하였다. 출판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판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해야 하며, 동의 없이 출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11) 실무상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는 ‘소멸등록’(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계약 해제, 허위 등록,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소급해서 등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말소등록’으로 하고 있다. 해당 등록종에 설정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멸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으나, 해지 등 계약기간 내에 관리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등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핵심 제8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①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쇄가 진행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량과 시기 등 중쇄 계획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출판물의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 ④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중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쇄의 시기, 수량,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¹⁾
- 1)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5항의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해 출판권자는 구체적인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판권자의 결정 내용이 저작권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제2항은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 및 판매 방법 등에 대해 출판권자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쇄가 진행될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출판권자가 중쇄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저작권자와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미리 중쇄 계획을 알리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반면 제3항은 중판(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재출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함을 규정한다. 중판은 기존 출판물의 내용에 변경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판권자가 중판을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사전에 합의하도록 한 것이다. 본 제3항의 경우 저작권자와 저작자(저작권권자)가 동일한 경우를 상정한다. 만약 이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판권을 설정할 권한 있는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권권자(동일성유지권자)의 허락 없이는 중판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상 재고가 없는데도 출판권자가 임의로 중쇄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63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58조 제1항에 따른 계속출판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본조 제4항 및 제5항은 이러한 계속출판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이 계약의 제24조 제3항에서도 계속출판의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제9조 (대가의 지급)

- ① ‘출판권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 X 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 X 판매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 X 발행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 X 판매부수 ()
- ☐ 기타 _____
- ② ‘출판권자’는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사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출판권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저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금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⑤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정한다. ‘출판권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초판 제1쇄 및 이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의 선금금을 공제할 수 있다.
- ⑥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제1항에서 발행부수 내지 판매부수는 출판 및 정산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제4항에서 ‘선금금’은 미리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의 일부이지만, 현장에서 저작권 사용료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7항을 추가하여 “‘출판권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계약금에서는 저작권사용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면 된다.

제5항에서 반드시 선금금을 공제할 것이라면 ‘공제할 수 있다’ 대신 ‘공제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 선금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출판권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제1쇄 및 이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의 선금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

저작권법 제63조의2 및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인지를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를 특약으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 없이 검인지를 생략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6항은 검인지 부착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핵심 제10조 (정산 등)

- ①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제9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인세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제3조의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항은 출판권자가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와 인세 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공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출판물의 발행 현황과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항에서는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료를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자는 정산 내역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저작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정산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정”은 출판권자가 자료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법령 기타 계약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상 저작물의 출판물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제1항에서는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게 하고, 제2항에서는, 출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령 마케팅(홍보)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하고,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이용료 등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출판권자가 일부 창작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므로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핵심 제12조 (출판권의 범위)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대한민국 내에서 출판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출판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출판권자가 출판 등을 할 수 있게 하되, 그 언어를 한국어로 제한하였다.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하거나, 한국어 외의 언어로 출판할 때는 원칙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한국어 외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물은 2차적저작물이다. 따라서 한국어 외의 언어로 출판할 경우에는 협의와 별개로, 제12조 제2항 후문 내용대로 부속합의서나 별도 계약을 통해 번역 저작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따로 정해야 한다.

핵심 제13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출판권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출판권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출판권자에게 허락된 권리는 출판권이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출판권자가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고자 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이를 명시한 조항이다.

또한 저작물에 대해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싶은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출판권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한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예시조항이다.

핵심 제14조 (교정 및 편집)

-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출판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출판권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교정 및 편집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지가 없는 사소한 수준이어야 한다. 교정 및 편집 과정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조 제2항에서는 교정 및 편집 후 저작자의 확인을 구하도록 정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존중하고, 저작물이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만약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불일치한다면 여기서 ‘저작권자’는 ‘저작자’로 변경해야 한다.

핵심 제15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 등을 올바르게 표기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출판권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 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출판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5조는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정이 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항 관련, 성명표시권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항은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와 저작권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저작권자가 제시한 실명이나 이명 등 정보를 믿고 출판한 출판권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제5항에서는 이런 경우 출판권자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해 전달해야 한다는 보증조항을 두었다. 만약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이 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16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출판권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출판권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항은 ‘출판권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의 권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저작권자는 계약 이전과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제한되는 행위는 출판권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한

정된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는 저작권자가 제3자와 새로운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출판권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기간을 ‘계약기간 이전과 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대상 저작물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저작물을 제공한 저작권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그 원인 제공자가 출판권자인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였다.

제17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보 등)

-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보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핵심 제18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출판권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 2항은 계약 종료 시 출판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원고와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히 육필 원고나 원화의 소유권은 본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출판권자가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자 자료의 경우에도 파기 후 서면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무단 사용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제1, 2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출판권자는 원고 반환을 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항은 출판권자가 원고 및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게 하고, 계약 종료 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다. 다만 출판권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였다.

핵심 제19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 물량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9조 제5항 후문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출판권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계약기간 내 발행된 도서 재고 물량에 대한 배포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규정이다. 출판권이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으나,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거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저작권법 제63조2, 제61조 참조). 따라서 계약기간 내 합법적으로 발행된 도서의 재고에 대해서는 특약에 따라 일정 기간(조항에서 ‘___개월’) 동안 배포를 허용하였다. 재고 배포에 대해 출판권자는 제9조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 선급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9조 제5항 후문을 준용하여 배포에 따른 추가 저작권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는 배포 기간을 한정하고, 지급된 대가에 상응하는 복제물만 배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출판권자의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0조 (출판권자의 성과 존중)

-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출판물의 형식에 대한 ‘출판권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출판권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출판권에 준용되는 저작권법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출판권자 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판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출판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제1항에서는 상도의를 존중하여, 만일 저작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해 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제2항에서는 만일 출판권자가 자신의 출판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핵심 제23조 (계약 내용의 변경)

-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계약 내용은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을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본계약은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체결한 후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항에서 부속합의서의 범위는 이 계약(=본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이 조항은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표시하여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상단에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시해야 한다.

핵심 제2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출판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출판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출판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출판 이후에 해제를 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2항에서는 출판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출판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5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

제26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핵심

제27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제28조 (비밀유지)

-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대신 자문을 받거나, 수사·소송에 이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에 이용되거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싶지 않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남겨놓는 경우 예외 없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1, 2항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비밀유지의무와 별도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29조 (저작권자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권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핵심

제30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술인고용보험)

- ① ‘출판권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출판권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등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조항에서 저작권자는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한 저작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32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항에서 ‘관할’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가 원칙인데, 합의하여 미리 재판받을 곳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업자 소재지로 미리 기재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대신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도 있다.

핵심 제33조 (설명 의무)

- ①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당사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검토 및 자문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제1항에 의해 출판권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제시한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의무는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저작권자가 요청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설명의무는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법률 자문받을 수 있도록 최소 15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¹⁾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출판권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1)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가 여럿이라면 저작권자 모두를 표시해야 한다.

[별표2]

전자책 발행 계약서(제2조 제2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전자책 발행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책 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해 상대방(전자책 발행업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여주는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의하여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하려고 하는 자에게 설정해줄 수 있는 권리이다.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주면 상대방은 작품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때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전송권을 보유한 자이다(저작권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복제·전송권을 양도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로부터 복제·전송권을 양수한 저작재산권자가 이 계약을 통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본계약서는 저작물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어떤 저작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작품명(제호)으로 특정할 수 있고 아직 제목이 확정 전이라면 ‘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첨] 문서 등을 통해 내용의 시놉시스나 줄거리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여 대상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 계약서는 소설의 웹툰화 등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 원저작물(가령 소설)이 있는 웹툰(=원작에 대해서 2차적저작물)에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원저작물 역시 표시가 필요하다. 원저작물을 표시해야 이 저작물이 어떤 원저작물에 기반한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다르다면 저작자를 표시할 필요도 있다.

핵심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전자책 발행권을 부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를 전자책으로 발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 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8.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9.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1.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12. “전자책”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13. “완전원고”는 교정·편집만 거치면 전자책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총 매출액”은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 지불금 등으로 대상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15.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세금, 앱마켓(구글·애플 등)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단, 총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전자책 발행업자’와 ‘저작권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자책 발행업자’가 CP사 등 에이전시인 경우는 공제하는 금액에 유통플랫폼에 배분되는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다.
16.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2조(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그대로 옮겼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8호, 제12호부터 제15호는 저작권법에 없는 용어이다.

제7호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배타적발행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배타적발행권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에서의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13호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대상 저작물이 만화나 웹툰 원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원고’ 조항이 별도로 있다.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교정과 편집만 거치면 전자책 발행이 가능’할 것이 기준이 된다.

제15호에서 세금, 앱마켓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는 일종의 예시이다. 따라서 총매출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제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등’은 삭제해 “순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전자책 발행업자가 에이전시 등 CP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플랫폼 유통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의 하에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유통 수수료를 언제나 수익분배 대상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박스 안에 참고사항으로 두었다.

핵심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저작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년까지로 한다.
-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제1항에서는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며 계약 종료 시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도 만료하도록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은 저작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규정은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합의·결정하면 될 것이다.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연장 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 관계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이 자동연장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연장 시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조건은 연장 전이라 할지라도 합의 하에는 변경할 수 있다. 즉 이 조항은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계약 조건을 다시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취지이고 계약 갱신 시에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명시하도록 하여 계약 연장 및 조건 변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증거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에는 연장 기간, 조건, 변경사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라는 문구는 기존 계약의 조항(예: 대가 지급 방식, 저작물 활용 범위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단,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특정 조건(예: 대가, 기간 등)을 변경하기로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서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면도 ‘서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핵심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①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을 할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을 갖는다.
- ③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상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 ① ‘전자책 발행업자’와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책 발행업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배타적발행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곧 저작권자가 제3자와 이종으로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배타적발행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배타적발행권 등록은 배타적발행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소멸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¹²⁾ 이때 등록의 말소나 소멸등록은 원칙적으로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등록 말소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조 제3항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해제해서 권리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정했던 기간을 앞당겨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지체없이/___일 이내에) 내에 배타적발행권설정등록을 말소하거나 소멸등록을 해야 한다.

12) 실무상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는 ‘소멸등록’(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계약 해제, 허위등록,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소급해서 등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말소등록’으로 하고 있다. 해당 등록종에 설정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멸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으나, 해지 등 계약기간 내에 권리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등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핵심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자책 발행업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을 발행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은 저작권자가 완전원고를 인도(=주는 것)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때 저작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원고를 인도하는 기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동의’는 사전에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인도 시기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임의로 완전원고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제2항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대상 저작물을 발행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의 효과)을 준용한 내용이다. 조항의 취지는 배타적발행권자(=전자책 발행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발행 및 활용을 약속한 점에 근거한다. 저작권자는 발행을 통해 인지도 상승, 포트폴리오 활용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자책 발행업자가 임의로 발행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면 계약 당시의 기대와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 계약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매출에 비례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발행 지연은 저작권자의 수익 발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책 발행업자가 기한 내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기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을 경우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다만 본 조항에서는 특약을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공란(‘___개월’)으로 남겨둬으로써 유연하게 하였다.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행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해야 하며, 동의 없이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핵심

제7조 (발행 등)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체 형식 :

- 이용 형식 :

② 발행물의 정가, 서비스 시기, 판매방법, 홍보 · 광고 등은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관련 사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의 ‘매체 형식’, ‘이용 형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이때 ‘매체 형식’이나 ‘이용 형식’은 현재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로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시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매체 형식이나 이용 형식까지 포괄하게 되면 쌍방이 계약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저작권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저작물이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항에 의해 전자책 발행업자는 구체적인 정가, 서비스 시기, 판매방법, 홍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자책 발행업자의 결정 내용이 저작권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전자책 발행업자가 임의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계속발행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본조 제3항은 이러한 계속발행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이 계약의 제22조 제3항에서도 계속발행의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제8조 (대가의 지급)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순 매출액의 __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일 내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저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금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2항의 선금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사용료를 _____개월에 한 번씩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항에서 정산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비용을 제외한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순 매출액은 제2조의 정의에 따르기 때문에 순 매출액 산출을 위해 총매출액에서 공제하는 비용 범위를 특정할 것이라면 이 계약서 제2조를 수정하여야 한다.

순 매출액 산정을 위해 총매출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의 범위를 합의하였음에도 전자책 발행업자가 상호 합의하지 않은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여 저작권사용료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 정해진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과소하게 지급한 셈이 되므로 이 계약 제8조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항에서 ‘선금금’은 미리 지급한 저작권사용료의 일부이지만 현장에서 저작권사용료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제5항을 추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계약금에서는 저작권사용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면 된다.

제3항에서는 반드시 선금금을 공제할 것이라면 ‘공제할 수 있다’ 대신 ‘공제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 선금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제3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2항의 선금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고치면 된다.

제4항의 ‘다음 달’은 저작권사용료를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의미한다.

핵심 제9조 (정산 등)

- ① ‘전자책 발행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8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배타적발행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방식별(구매, 대여, 구독 등) 판매수량/비율 및 총 판매금액
 2.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3. 순 매출액
 4.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총 판매금액, 비용, 순 매출액, 정산비율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배타적발행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제3조에 따른 계약 종료일 이후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항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전자책의 발행 현황과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산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종적으로 저작권자가 받게 된 저작권사용료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사용료가 산출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산서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는 이 계약서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방식별 판매비율 및 판매금액과, ‘순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순 매출액’ 자체와 ‘순 매출액’에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만약 다른 종류의 비용을 공제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그 비용 역시 제9조 제1항에 추가되어야 하며 정산 과정에서 명시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등’은 상호 간 항목 합의 후 삭제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제2항에서는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료를 전자책 발행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정산 내역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저작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정산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정”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료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법령 기타 계약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한다.

제1항에서는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게 하고, 제2항에서는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령 마케팅(홍보) 비용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하고,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이용료 등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전자책 발행업자가 일부 창작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므로 제1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핵심 제11조 (배타적발행권의 범위)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행 등을 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전자책 발행업자가 발행 등을 할 수 있게 하되, 그 언어를 한국어로 제한하였다.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하거나, 한국어 외의 언어로 발행 등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한국어 외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물은 2차적저작물이다. 따라서 한국어 외의 언어로 발행 등을 할 경우에는 협의와 별개로, 제11조 제2항 후문 내용대로 부속합의서나 별도 계약을 통해 번역 저작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따로 정해야 한다.

핵심 제1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허락한 권리만을 갖는다.
-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는 배타적발행권이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전자책 발행업자가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고자 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는 이를 명시한 조항이다.

또한 저작물에 대해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싶은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한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예시조항이다.

제13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전자책 발행업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전자책 발행업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항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전자책 발행업자의 권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저작권자는 계약 이전과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제한되는 행위는 전자책 발행업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한정된다. 계약 종료 후에는 저작권자가 제3자와 새로운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책 발행업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기간을 ‘계약기간 이전과 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대상 저작물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저작물을 제공한 저작권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그 원인 제공자가 전자책 발행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였다.

핵심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4조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정이 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항 관련, 성명표시권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항은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조항이다.

저작자와 저작권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저작권자가 제시한 실명이나 이명 등 정보를 믿고 발행한 전자책 발행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제5항에서는 이런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해 전달해야 한다는 보증조항을 두었다. 만약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이 항은 삭제할 수 있다.

핵심 제15조 (교정 및 편집)

-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전자책 발행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교정 및 편집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지가 없는 사소한 수준이어야 한다. 교정 및 편집 과정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조 제2항에서는 교정 및 편집 후 저작자의 확인을 구하도록 정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존중하고, 저작물이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만약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불일치한다면 여기서 ‘저작권자’는 ‘저작자’로 변경해야 한다.

핵심 제16조 (원고의 반환 등)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구매(일정 기간 또는 영구 소장)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 2항은 계약 종료 시 전자책 발행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원고와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히 육필 원고나 원화의 소유권은 본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자 자료의 경우에도 파기 후 서면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무단 사용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제1, 2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자책 발행업자는 원고 반환을 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항은 전자책 발행업자가 원고 및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게 하고, 계약 종료

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다. 다만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였다.

전자적으로 발행된 저작물을 소비자들이 구매함으로써 영구적인 이용이나 소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자책 발행의 목적이기도 하므로 저작권자가 기존에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물론 새로운 소비자가 대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은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차질 없이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조 제4항에서는 최소한의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만약 제18조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서라면 이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구매(일정 기간 또는 영구 소장)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다.

핵심

제17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전자책 발행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전자책 발행업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계약기간 내 발행된 유형물¹³⁾의 재고가 있는 경우 그 배포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규정이다.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책 발행업자는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으나,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거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저작권법 제61조 참조). 따라서 계약기간 내 합법적으로 발행된 유형물의 재고에 대해서는 특약에 따라 일정 기간(조항에서 ‘___개월’) 동안 배포를 허용하였다. 재고 배포에 대해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 선급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배포에 따른 추가 저작권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는 배포 기간을 한정하고, 지급된 대가에 상응하는 복제물만 배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전자책 발행업자의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8조 (전자책 발행업자의 성과 존중)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전자책의 형식에 대한 ‘전자책 발행업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전자책 발행업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13) 전자책은 출판물과 달리 유형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형물로 제작되거나 복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다.

제19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제62조 1항에서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전자책 발행업자 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자책 발행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획득한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제1항에서는 상도의를 존중하여, 만일 저작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준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제2항에서는 만일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신의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계약 내용은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을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본계약은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체결한 후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항에서 부속합의서의 범위는 이 계약(=본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이 조항은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표시하여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상단에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시해야 한다.

핵심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발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발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발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존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발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전자책 발행 이후에 해제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2항에서는 대상 저작물 발행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발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3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 다.

핵심 제25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제26조 (비밀유지)

- ①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대신 자문을 받거나, 수사·소송에 이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에 이용되거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조항을 별도로 두고 싶지 않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남겨놓는 경우 예외 없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1, 2항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비밀유지의무와 별도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27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핵심 제28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술인고용보험)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력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등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조항에서 저작권자는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한 저작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30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전자책 발행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항에서 ‘관할’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가 원칙인데, 합의하여 미리 재판받을 곳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업자 소재지로 미리 기재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대신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도 있다.

핵심 제31조 (설명 의무)

-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당사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검토 및 자문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제1항에 의해 전자책 발행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제시한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의무는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한다. 저작권자가 요청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저작권자가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설명의무는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15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전자책 발행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¹⁾

성 명(이명):

생 년 월 일:

주 소:

기 명 날 인: _____(인)

입 금 계 좌:

“전자책 발행업자”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_____ (인)

1)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가 여럿이라면 저작권자 모두를 표시해야 한다.

[별표3]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저작권자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_____(이하 ‘서비스 제공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본 연재계약서는 연재 저작물을 게재하는 플랫폼 등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서비스 제공업자)와 저작권자가 체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작자와 에이전시 등 CP사 사이 계약, CP사와 게재 매체 사업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절하게 조항을 만들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창작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와 저작자(창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령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이 저작권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조 목적조항을 비롯하여 이하 조항들을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본계약서는 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므로 어떤 저작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작품명(제호)으로 특정할 수 있고 아직 제목이 확정 전이라면 ‘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첨] 문서 등을 통해 내용의 시놉시스나 줄거리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여 대상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 계약서는 소설의 웹툰화 등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 원저작물(가령 소설)이 있는 웹툰(=원작에 대해서 2차적저작물)에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원저작물 역시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원저작물을 표시해야 이 저작물이 어떤 원저작물에 기반한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다르다면 저작자를 표시할 필요도 있다.

핵심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대상 저작물을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 6.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 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 8.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 9. “인터넷 사이트”는 서비스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 10. “온라인 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 11. “연재”는 대상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서비스”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마다 발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2. “PPL”(Product Placement)은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맥락 내에 제3자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을 노출시켜 홍보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 13. “완전원고”는 교정·편집만 거치면 연재가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 14. “총 매출액”은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 지불금 등으로 대상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 15.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세금, 앱마켓(구글·애플 등)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16. “코인”은 이용자가 대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 구매하는, 플랫폼이 발행하는 전자적 증표 또는 화폐를 말한다.
- 17.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2조(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그대로 옮겼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9호에서 제16호까지는 저작권법에는 없는 용어이다.

제13호에는 대상 저작물이 만화나 웹툰 원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원고’ 조항이 별도로 있다. 연재계약이기 때문에 ‘교정과 편집만 거치면 연재가 가능’할 것이 기준이 된다.

제14호에서 ‘이용자 지불금’은 일종의 예시이다. 광고료와 같이 다른 형태로 ‘대상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금액은 제14호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 만약 광고료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를 분명하게 합의하여 밝히는 것이 좋으며, ‘등’은 삭제해 “총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제15호에서 세금, 앱마켓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는 일종의 예시이다. 따라서 총 매출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제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등’은 삭제해 “순 매출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핵심 제3조 (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대상 저작물의 계약체결일로부터 (__개월 / __회 연재일)까지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계약기간 종료일 / 최종화 연재¹⁾일)로부터 __개월 간 (독점 / 비독점)으로 허락하며, 그에 따른 서비스 및 대가 지급, 정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이하 권리 허락 기간)한다.

1) 최종화 연재를 상호 합의 없이 임의로 변동시킬 수 없음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개월 / __회)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는 제1항의 기간만큼 존속한다.

제1항에서 ‘이 계약에 따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서 제4조 제1항의 연재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계약기간과 연재 종료 이후 권리 허락 기간을 구분하여 계약 종료 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대가 지급 및 정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연재 기간 또는 특정 기간(예: __개월)으로 한정된다.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연재 권리와 이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권자는 계약 종료일 또는 연재 최종화로 부터 __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권리 허락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산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계약기간 중의 의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항 하단 각주 1)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최종화 연재일’은 상호 합의 없이 임의로 지연시킬 수 없다. 이는 연재 계획의 일관성과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연장 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 관계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이 자동연장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연장 시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조건은 연장 전이라 할지라도 합의 하에는 변경할 수 있다. 즉 이 조항은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계약 조건을 다시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취지이고 계약 갱신 시에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2항에서는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명시하도록 하여 계약 연장 및 조건 변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증거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에는 연장 기간, 조건, 변경사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라는 문구는 기존 계약의 조항(예: 대가 지급 방식, 저작물 활용 범위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단,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특정 조건(예: 대가, 기간 등)을 변경하기로 동의하면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제2항의 ‘서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면도 ‘서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핵심 제4조 (권리의 부여)

①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연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1항의 권리를 독점적·배타적인 것으로 하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와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54조 제2호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일 이내에) 배타적발행권 말소 등록을 신청하고, ‘저작권자’에게 말소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 반드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 연재를 허락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저작물을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독점 연재에 적합하다.
- ‘배타적발행’을 허락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저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독점 연재에 적합하다. 이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연재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배타적 발행권 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소멸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¹⁴⁾ 이때 등록의 말소나 소멸등록은 원칙적으로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등록 말소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조 제4항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서비스 제공업자와 저작권자가 원한다면, 서비스 제공업자가 다른 플랫폼에서 저작물을 발행할 수 있다.

14) 실무상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는 ‘소멸등록’(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계약 해제, 허위 등록,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소급해서 등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말소등록’으로 하고 있다.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 설정을 등록하면 해당 등록종에 설정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멸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으나, 해지 등 계약기간 내에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등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 행사)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권리 허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 연재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 기재한 도메인 주소로 한정한다.

(예시) 가. www.웹툰연재사이트.com

②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1항에 기재한 인터넷 사이트 외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포함한다)를 연재 사이트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가격 정책, 서비스 방향 등을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홍보, 마케팅 및 프로모션 방법 등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관련 사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연재할 수 있는 사이트를 특정 도메인으로 한정하여, 권리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권리 허락 기간 동안 대상 저작물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연재할 수 있다. 이 도메인 주소는 계약에서 명시된 사이트로 한정되며, 계약 외 다른 사이트에서 연재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업자가 명시된 도메인 외의 사이트에서 연재를 진행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당사자들이 여러 도메인에 연재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아래에 “가. 연재사이트1”, “나. 연재사이트2” 등으로 사이트를 열거하면 된다.

제3항에 의해 서비스 제공업자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업자의 결정 내용이 저작권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제4항에서는 프로모션 등에서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령 무료 화수의 확대)가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또한 프로모션 방법 등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알려줄 의무도 정하였다.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연재의 계속)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조해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권리 허락 기간 중 ‘저작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대상 저작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재를 지연 또는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대상 저작물의 창작 및 인도를 거부하거나 연재를 지연 또는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연재는 상호 신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이므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 양자가 모두 연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연재를 계속할 수 없도록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상 저작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저작권자가 원고 창작 및 인도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 계약서 제24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핵심 제7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① ‘저작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__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__회 분량의 완전원고를 인도하고, 이후 계약기간 동안 (__일/_요일)마다 제2항에서 정한 1회 분량의 완전원고를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하여 원고는 회당 최소 __컷 내외의 완전원고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합의에 따라 분량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컷수보다 __컷 이상 늘어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컷당 _____원의 추가금을 지급한다.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1항의 연재에 필요한 분량의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항 관련, 주 1회 연재 기준 통상 50~70컷 내외로 계약하며, 계약 컷수가 늘어날수록 제9조에 따른 대가(원고료 등)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항은 저작권자가 완전원고를 인도(=주는 것)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때 저작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원고를 인도하는 기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동의’는 사전에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인도 시기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임의로 완전원고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원고의 인도 주기로는 괄호(_일/_요일)로 표기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즉 요일 연재일 경우 요일을, 10일 등 일정 주기 연재일 경우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월마다 특정 날짜에 하는 경우(가령 매월 25일) ‘매월 _일에’라고 고치면 된다.

제2항은 회차별 연재 분량의 무분별한 확대가 창작자와 웹툰 산업계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하에 ‘웹툰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는 적정 분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2항은 이에 따라 도입된 조항이다.

제3항은 약속된 원고가 인도된 이후에 연재일을 지연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재 주기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연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핵심 제8조 (휴재 등)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창작활동 중 적절히 휴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저작권자’는 건강한 창작활동을 위해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제공업자’는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한다. 만일 ‘저작권자’가 위 보장된 휴재 시간만큼 휴재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그 기간만큼 ‘저작권자’에게 휴재를 권고하고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휴재에 따른 모든 공지와 안내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하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휴재 사실을 안내하기 위한 별도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휴재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작품 연재·제작방식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8조 제2항 관련)

- ‘시즌제’의 경우 한 시즌 분량에 따라 연재주기 50회당 2회에 비례하는 수준의 휴재를 보장하며, ‘사전제작’의 경우 누적된 회차의 차감 없이 50회당 2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주 1회 연제작 기준 50주)당 2회의 휴재를 보장한다.
- 시즌제 : 일정 회차(100회 등)를 연재하고 일정 기간(n개월) 휴재하였다가 연재를 재개하는 구조
- 사전제작 : 상당한 분량의 선제작(20회 등) 후 연재를 개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2.12.16.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적정 일수의 휴재 권리가 제시된 바 있다. 본 제8조는 이 내용이 계약서 내에 명문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간 연재 기준 50회가 연재되는 대략적인 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연 15일)와 비슷한 기간(14일) 동안 쉴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나 창작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창작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핵심’ 조항으로 하였다.

제3항은 저작권자가 정해진 휴재 기간 동안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휴재 기간 중에도 불필요한 추가 작업(가령 휴재 공지용 만화)을 요구받아 휴식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제4항은 사회 통념상 휴재가 필요함에도 서비스 제공업자나 CP사가 휴재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하에 휴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 제9조 (대가의 지급)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1회차 분량의 원고에 대해 연재료로 _____원을 지급한다.
-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본조의 대가의 지급 및 제10조의 정산 등은 매월 한 번씩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재료”는 완전원고를 인도할 때마다 지급되는 창작의 대가를 의미한다. 연재료는 저작권자가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완전원고 1회 분량에 대해 산정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시점과 금액이 정해진다. 1개월마다 특정 요일이 포함되는 횟수가 다르고, 연재 주기도 계약마다 다르므로 완전원고 인도 1회 분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핵심 제10조 (정산 등)

-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수익분배(Revenue Share, 이하 ‘RS’라 한다) 비율에 따라 순 매출액을 나누어 갖는다. 이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RS 비율은 ___%: ___%(저작권자:서비스 제공업자)이며,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 방식은 제2항에서 정한다.
- ②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는 _____방식으로 한다.
- ③ 순 매출액은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연재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대상 저작물이 서비스되는 동안에는 RS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와 순 매출액을 나누어 갖는다.
- 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__주/ __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료(엑셀 등 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한다. 수익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해당 기간 대상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총 매출액(대여·소장·이벤트 판매 수량, 스토어별 판매 수량, 유료 판매 비율 등 포함)

※ 괄호 안은 예시적이며, 계약내용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2.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판매될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저작물의 회차별 가격 및 코인당 단가
- 3.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 4. 순 매출액 내역
- 5.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원고료, 수익분배금, 차감액, 이월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⑥ ‘저작권자’가 제5항의 정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근거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⑦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내역 및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 일체를 제3조의 권리 소멸일로부터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⑧ ‘저작권자’가 제7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6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항에서 정산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비용을 제외한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본조 제3항에 따라 순 매출액은 제2조의 정의에 따르기 때문에 순 매출액 산출을 위해 총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비용 범위를 특정할 것이라면 이 계약서 제2조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비용을 공제할지 여부와 공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하여야 한다. 만약 매출에 의해 발생한 수익에서 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RS를 비율에 따라 모두 지급할 것이라면 이 문장은 “이때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RS 비율은 ___%: ___%(저작권자:서비스 제공업자)이다”로 수정하고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의 공제 방식은 제2항에서 정한다.”라는 문장과 제2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업계에서 사용되는 선차감, 후차감, MG 등의 용어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선차감과 후차감은 각기 이해하는 바가 달라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재료와 비용을 공제할지 여부, 공제를 할 것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상호 합의 하에 의미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부록]에서 예시로 보는 바와 같이 연재료, 회차당 유료수익, 비용을 같은 조건으로 전제하더라도, 연재료와 비용을 공제할 지, 공제를 어떻게 할지, RS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수익이 크게 달라진다.

제3항에서 세금, 앱마켓 비용, (CP사가 있는 경우)플랫폼 비용, 마케팅 등 기타 비용 중 어디까지 공제한 액수를 ‘순 매출액’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어디까지 할지에 따라서 [부록]의 예시처럼 최종적인 수익이 달라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4항은 연재계약 종료 이후 대상 저작물을 계속해서 제공할 경우, RS를 비롯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물의 지속적 상업적 가치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이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이 조항에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눌 시에는 “순 매출액”을 “총 매출액”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수익분배와 무관하게 연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

제5항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해당 기간동안 저작물이 창출한 매출이나 수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산서를 제공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산을 할 때는 저작권자가 받게 된 정산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따라서 정산금이 산출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산서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서는 이 계약서 제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방식별 판매비율 및 판매금액과, ‘순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순 매출액’ 자체와 ‘순 매출액’에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만약 다른 종류의 비용을 공제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그 비용 역시 제10조 제5항에 추가되어야 하며 정산 과정에서 명시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더불어 ‘등’은 상호 간 항목 합의 후 삭제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제5항 제1호와 관련, 조회 수나 순위는 높는데 무료 회차가 대부분인 경우 유료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유·무료 비율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료 회차 공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을 경우 얼마나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에 상호 오해를 없애고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유료/무료 비율을 정산 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6항에서는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정산 내역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저작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정산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정”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자료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법령 기타 계약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11조 (조회 수)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회차별 조회 수 정보를(__일마다 1회) 제공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조회 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한다.
- ③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예고편, 후기,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제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 ④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1항에서는 창작하는 비용은 창작을 하는 저작권자가 부담하게 하고, 제2항에서는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령 마케팅 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하고,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이용료 등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가 일부 창작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므로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3항에서는 확실히 별도로 비용 지급방식을 정하는 경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면 합의에 의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핵심 제13조 (권리의 범위)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시한 도메인에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 또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행 등을 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는 제5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하기로 합의한 도메인에서 서비스 제공업자가 발행 등을 할 수 있게 하되, 그 언어를 한국어로 제한하였다.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발행하거나, 한국어 외의 언어로 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어 외의 언어로 번역한 번역물은 2차적저작물이다. 따라서 한국어 외의 언어로 발행할 경우에는 협의와 별개로, 제13조 제2항 후문 내용대로 부속합의서나 별도 계약을 통해 번역 저작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따로 정해야 한다.

핵심 제1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 ②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이용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중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외 제3자가 2차적저작물로서의 이용을 요청할 때,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는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연재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서비스 제공업자가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고자 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이를 명시한 조항이다.

또한 저작물에 대해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싶은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한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예시조항이다.

제15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권리 허락 기간 중에도 ‘서비스 제공업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해당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해명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책임이 없는 상대방은 연재중단 등의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저작권자는 계약 이전과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제한되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한정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종료 후에는 저작권자가 제3자와 새로이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업자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기간을 ‘권리 허락 기간 이전과 권리 허락 기간 중’으로 한정하였다.

제2항에서는 대상 저작물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저작물을 제공한 저작권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그 원인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였다.

연재의 경우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재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연재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제2항에서 규정하였듯 저작권자가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였거나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공한 소스가 불법적으로 확보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재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3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해명과 해결을 하도록 하였고 해명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재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핵심 제1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창작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6조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의 당사자인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계약에서 저작권자는 저작자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공동저작물 등으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보다 분명히 저작인격권의 귀속 주체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작자’로 표기하였다.

제2항 관련, 성명표시권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항은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조항이다.

이 계약을 서비스 제공업자와 체결하는 저작권자가 저작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저작권자가 제시한 실명이나 이명 등 정보를 믿었던 서비스 제공업자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5항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보증조항을 두었다. 만약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이 항은 삭제할 수 있다.

핵심

제17조 (교정 및 편집)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교정 및 편집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지가 없는 사소한 수준이어야 한다. 교정 및 편집 과정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조 제2항에서는 교정 및 편집 후 저작권자의 확인을 구하도록 정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존중하고, 저작물이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만약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불일치한다면 여기서 ‘저작권자’는 ‘저작자’로 변경해야 한다.

핵심

제18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업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구매(일정 기간 또는 영구 소장)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 2항은 계약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원고와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히 육필 원고나 원화의 소유권은 본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자 자료의 경우에도 파기 후 서면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무단 사용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제1, 2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는 원고 반환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항은 서비스 제공업자가 원고 및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게 하고, 계약 종료 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였다.

연재되는 저작물을 소비자들이 구매함으로써 영구적인 이용이나 소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연재의 목적이기도 하므로 저작권자가 기존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서비스까지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물론 새로운 소비자가 대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은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차질 없이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조 제4항에서는 최소한의 자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만약 제19조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서라면 이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구매(일정 기간 또는 영구 소장)한 이용자에게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 존중)

①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대상 작품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가로페이지 만화를 세로 형태의 웹툰으로 변환하는 등) ‘서비스 제공업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서비스 제공업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핵심

제21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계약 내용은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을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본계약은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체결한 후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항에서 부속합의서의 범위는 이 계약(=본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이 조항은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표시하여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상단에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시해야 한다.

핵심 제2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연재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연재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연재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연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 제공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서비스 제공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제2호의 단서 기간 포함)까지 발생한 모든 대금(원고료, RS 등)을 지급한다.
2. ‘서비스 제공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연재가 시작된 이후에 해제를 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서비스의 처리 등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2항에서는 연재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지가 이루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연재 플랫폼 약관에서 30일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존에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이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조 제4항 제2호에서는 30일간 서비스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간이 더 짧다면 30일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핵심 제25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제26조 (비밀유지)

-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대신 자문을 받거나, 수사·소송에 이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에 이용되거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싶지 않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남겨놓는 경우 예외 없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1, 2항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비밀유지의무와 별도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27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핵심 제28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예술인고용보험)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서비스 제공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등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조항에서 저작권자는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한 저작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30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항에서 ‘관할’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가 원칙인데, 합의하여 미리 재판받을 곳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업자 소재지로 미리 기재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구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대신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도 있다.

핵심 제31조 (설명 의무)

-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당사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검토 및 자문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제1항에 의해 서비스 제공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제시한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의무는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한다. 저작권자가 요청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설명의무는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15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32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서비스 제공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¹⁾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서비스 제공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1)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가 여럿이라면 저작권자 모두를 표시해야 한다.

[부록] 완전원고 대가 계산 방식의 구체적 설명

I. 완전원고 대가 계산 방식의 단계별 이해와 기존 용어의 문제점

1. 완전원고 대가 계산 방식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래 세 가지이다.

회차당 대가(연재료, 고료 등)와 수익 배분의 관계

① 회차당 대가를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지급 과정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회차당 대가를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분배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함

③ 회차당 대가를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분배 비율 적용 후에 공제함
2. 회차당 비용과 수익 배분의 관계

① 회차당 비용을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지급 과정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회차당 비용을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분배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함

③ 회차당 비용을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분배 비율 적용 후에 공제함
3. 회차당 대가가 저작권자의 유료수익보다 많은 경우의 처리 방법

① 회차당 대가와 유료수익이 무관해서 처리할 것이 없음

② 회차당 대가를 유료수익에서 공제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되더라도 월말에 탕감함

(즉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순간 적자는 0원이 됨)

③ 회차당 대가를 유료수익에서 공제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되면 연재 종료 시까지 적자가 누적되며, 연재 종료 시 탕감함

④ 회차당 대가를 유료수익에서 공제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되면 연재 종료 시까지 적자가 누적되며, 연재 종료 시에도 탕감해주지 않음
- ‘1. 회차당 대가(연재료, 고료 등)와 수익 배분의 관계’와 관련하여, 회차당 대가를 유료수익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 방식(1-①)을 소위 ‘고료제’, 유료수익 분배 비율 적용 전에 회차당 대가를 공제하는 방식(1-②)을 소위 ‘선차감 MG’, 유료수익 분배 비율 적용 후에 회차당 대가를 공제하는 방식(1-③)을 소위 ‘후차감 MG’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은 오히려 대가 계산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러한 호칭에는 ‘2. 회차당 비용과 수익 배분의 관계’, ‘3. 회차당 대가가 저작권자의 유료수익보다 많은 경우의 처리 방법’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회차당 대가와 수익 배분 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최종적인 수익 산정에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선차감’ 혹은 ‘후차감’ 제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로, 서비스 제공업자(통상 플랫폼)와 저작권자 중간에 중간 유통업자(소위 ‘CP사’)가 있는 경우 계산이 한 단계 늘어난다. 따라서 둘 중 한 단계는 ‘선차감’, 다른 단계는 ‘후차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로, ‘MG(Minimum Guarantee)’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유료수익에서 회차당 대가를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연재 종료 시에도 적자분을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는 결국 이를 갚아야 한다. 즉 최소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넷째로, 용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서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한쪽에서는 ‘선차감’으로, 다른 쪽에서는 ‘후차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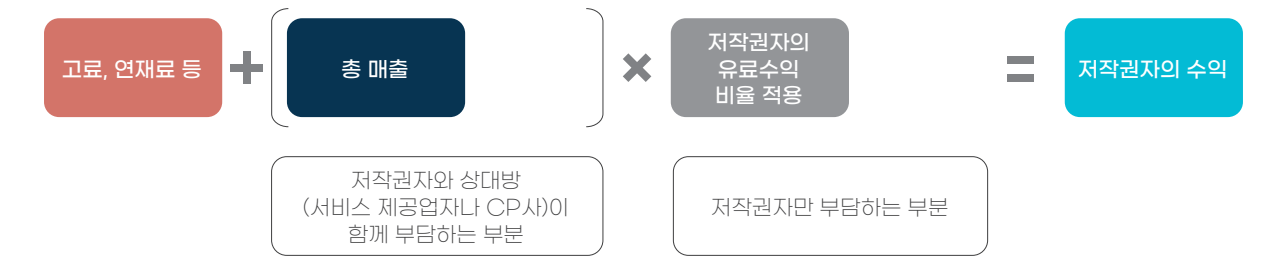
따라서 ‘선차감MG’, ‘후차감MG’와 같은 단어는 지양하고 계약 시 위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대가 지급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를 권한다.

II. 저작권자의 수익 계산 방법

1. 저작권자의 수익 발생 단계

저작권자의 수익은 두 차례 발생한다. 첫 번째는 고료, 연재료 등으로 불리는 원고 당 대가다(표준계약서 기준 제9조). 두 번째는 소위 RS로 불리는 유료수익 정산금이다(표준계약서 기준 제10조). 이러한 유료수익은 유료수익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용이나 고료(연재료)가 공제되는 순서가 유료수익 비율을 곱하기 전인지, 유료수익 비율을 곱한 후인지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총 수익은 ‘고료+정산금’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정산금의 계산 방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은 총 매출액이다. 총 매출액은 표준계약서에서 수익분배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순 매출액(총 매출액에서 세금, 애플마켓 수수료 등을 공제한 값)과는 다른 값으로서, 콘텐츠가 판매되면서 발생한 매출 전체를 의미한다. 총 매출액에서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비율을 적용하기 전까지 공제되는 값은 저작권자와 상대방(서비스 제공업자나 CP사)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고, 유료수익 비율을 적용한 후에 공제되는 값은 저작권자만 부담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서의 수익 계산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료(연재료), 총 매출액, 유료수익 비율이 모두 동일하다고 전제했을 때, 저작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서비스 제공업자 등 상대방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의 정산은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고료(연재료)와 비용은 모두 서비스 제공업자 등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저작권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서비스 제공업자 등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은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비율을 적용한 후 고료(연재료)와 비용을 모두 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가 결과적으로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다. 유료수익 비율을 적용하기 전에 비용이나 고료(연재료)를 공제할 경우, 저작권자와 상대방(서비스 제공업자 등)은 유료수익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비용이나 고료(연재료)를 부담한다.

2. 표준계약서에 따른 비용과 고료(연재료) 공제 방법

가. 비용 나누어 생각하기

표준계약서는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익분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표준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또한 표준계약서는 “순 매출액”이란 “총 매출액에서 “세금, 애플마켓(구글·애플 등)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표준계약서 제2조 제15호). 따라서 정의 규정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이러한 비용은 순 매출액 산정을 위해 당연히 공제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표준계약서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순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나 항목을 줄이거나 늘리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즉 제10조 제3항의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 제12조 제1항에서 저작권자가 부담하도록 한 창

작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도 있고, 제12조 제2항에서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판매, 홍보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애플마켓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공제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간에, 표준계약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분배는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표준계약서 제10조 제1, 4항). ‘순 매출액’은 앞서 본 것처럼 비용을 공제한 액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¹⁵⁾ (비용 공제 방식을 다르게 하는 정산법에 대해서는 아래 “3. 표준계약서와 다른 정산 방법”에서 자세히 다룸)

나. 고료(연재료) 공제

표준계약서는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고료(연재료)를 공제할지, 공제를 한다면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할지 후에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표준계약서 제10조 제2항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남겨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가 고료(연재료)를 모두 책임지고 부담할지(=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 저작권자 부분에서 공제), 유료수익 비율만큼만 분담할지(=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 공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할지(=저작권자에게서 공제하지 않음)를 신중히 검토하고 합의 하에 정해야 한다.

3. 표준계약서와 다른 정산 방법

가. 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순 매출액 대신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할 것 없이 유료수익 비율을 적용한다. 고료(연재료)를 공제하지 않을지 먼저 정하고, 고료(연재료)를 공제할 것이라면 고료(연재료) 공제 단계(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 vs. 후)를 고르면 된다.

나.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계산

비용을 서비스 제공업자가 아니라 저작권자에게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비용을 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에 저작권자가 가져갈 부분에서 공제하면 된다.

다. CP사가 중간에 존재하는 경우의 계산

표준계약서는 서비스 제공업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직접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CP사가 중간에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자와 CP사, CP사와 저작권자 사이에 두 번의 정산이 발생한다. 서비스 제공업자(플랫폼)가 CP사에게 선급금이나 투자금을 줄 경우 이는 고료(연재료)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즉 서비스 제공업자가 CP사에게 나누어 줄 매출액에서 선급금이나 투자금을 공제할지, 서비스 제공업자가 함께 이를 비율만큼 분담할지 정해야 한다. 이렇게 공제된 선급금이나 투자금은 CP사와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CP사가 부담할지, 저작권자와 함께 분담할지(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 공제), 저작권자에게 모두 부담시킬지(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 공제) 다시 나누어진다. 아래에서 설명할 정산 예시를 참고하여, 두 차례 정산이

15)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계약서 제9조에 의해 지급된 고료(연재료)는 공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반면 ‘순 매출액’ 산정을 위해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은 표준계약서 제10조 제2항과 무관하다.

이루어지는 경우에 응용해볼 수 있다.

III. 예시를 통해 보는 유료수익 계산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한 회차에 대해 수익분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서 유료수익 계산을 예시로 들어보려 한다.¹⁶⁾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정산 당사자: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직접계약)
- ① a: 회차당 대가(연재료, 고료 등)=100만 원
- ② b: 회차당 총 매출액=200만 원
- ③ c: 저작권자의 유료수익 비율=80%
- ④ d1: 표준계약서 제2조 제15호상의 비용(마켓 수수료, 환불비용 등)=20만 원
- ⑤ d2: 표준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홍보비용 등)=30만 원

1. 표준계약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정산 방법

앞서 본 것처럼 표준계약서는 제2조 제15호에 따라 구한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 매출액에서 d1을 공제한 후 유료수익 비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유료수익 비율(c)을 곱하기 전에 d1을 공제해야 하고, 고료(연재료)(a)는 공제하지 않거나/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하거나/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에 공제할 수 있다.

a

+

b

-

-

d1

-

×

c

-

-

-

=

저작권자의
수익

a+(b-d1)Xc
=수익

a

+

b

-

a

-

d1

-

×

c

-

-

-

=

저작권자의
수익

a+(b-a-d1)Xc
=수익

a

+

b

-

-

d1

-

×

c

-

a

-

-

=

저작권자의
수익

a+(b-d1)Xc-a
=수익

계산 예시
① d1만 공제해서 순 매출액을 구하고 고료(연재료)는 공제하지 않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20만 원(d1)}×80%(c)=2,440,000원
② d1만 공제해서 순 매출액을 구하고 고료(연재료)는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하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100만 원(a)-20만 원(d1)}×80%(c)=1,640,000원
③ d1만 공제해서 순 매출액을 구하고 고료(연재료)는 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에 공제하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20만 원(d1)}×80%(c)-100만 원(a)=1,440,000원

16) 여기에서는 한 회차에 대해서만 수익분배를 계산하기 때문에, 앞서 본 세 가지 포인트 중 '3. 회차당 대가가 저작권자의 유료수익보다 많은 경우의 처리 방법'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d2도 총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
료수익 비율이 적용되기 전 단계에서 d1, d2를 모두 공제해야 한다.

a

+

b

-

-

d1

-

d2

×

c

-

-

-

=

저작권자의
수익

a+(b-d1-d2)Xc

=수익

a

+

b

-

a

-

d1

-

d2

×

c

-

-

-

=

저작권자의
수익

a+(b-a-d1-d2)Xc

=수익

a

+

b

-

-

d1

-

d2

×

c

-

a

-

-

=

저작권자의
수익

a+(b-d1-d2)Xc-a

=수익

계산 예시

- ④ d1와 d2를 공제해서 순 매출액을 구하고 고료(연재료)는 공제하지 않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20만 원(d1)-30만 원(d2)}×80%(c)=2,200,000원
- ⑤ d1와 d2를 공제해서 순 매출액을 구하고 고료(연재료)는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하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100만 원(a)-20만 원(d1)-30만 원(d2)}×80%(c)=1,400,000원
- ⑥ d1와 d2를 공제해서 순 매출액을 구하고 고료(연재료)는 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에 공제하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20만 원(d1)-30만 원(d2)}×80%(c)-100만 원(a)=1,200,000원

2. 표준계약서와 다른 정산 방법

가. 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순 매출액을 따로 구하지 않고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d1과 d2는 공제되지 않고, 고료(연재
료) 공제만이 문제된다.

a

+

b

-

-

-

×

c

-

-

-

=

저작권자의
수익

a+bXc

=수익

a

+

b

-

a

-

-

×

c

-

-

-

=

저작권자의
수익

a+(b-a)Xc

=수익

a

+

b

-

-

-

×

c

-

a

-

-

=

저작권자의
수익

a+bXc-a

=수익

계산 예시

- ⑦ 총매출액 기준으로 고료(연재료) 공제하지 않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80%(c)=2,600,000원
- ⑧ 총매출액 기준으로 고료(연재료)를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하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100만 원(a)}×80%(c)=1,800,000원
- ⑨ 총매출액 기준으로 고료(연재료)를 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에 공제하는 방법
100만 원(a) + 200만 원(b)×80%(c)-100만 원(a)=1,600,000원

나.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계산

순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d1)이나, 표준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의해 서비스 제공업자가 부담해
야 할 비용(d2)을 저작권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식의 정산금 산정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비용은 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 공제하면 된다. 저작권자의 고료(연재료)를 공제할 것인지, 공제한다면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후 중
어느 단계에서 공제할 것인지는 따로 정해야 한다.

고료(연재료)를 공제하지 않으면서 d1만 저작권자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 d2까지 부담하게 할 것인지로 나누어 계산하
면 다음과 같다.

a

+

b

-

-

-

×

c

-

-

d1

-

=

저작권자의
수익

a+bXc-d1

=수익

a

+

b

-

-

-

×

c

-

-

d1

-

d2

=

저작권자의
수익

a+bXc-d1-d2

=수익

계산 예시

- ⑩ 저작권자의 고료(연재료)는 공제하지 않으면서, 본래 순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함께 부담했어야 했던 비용(d1)을 저작
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
100만 원(a) + 200만 원(b)×80%(c)-20만 원(d1)=2,400,000원
- ⑪ 저작권자의 고료(연재료)는 공제하지 않으면서, 본래 순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함께 부담했어야 했던 비용(d1)과 홍보
비용 등 여타 비용(d2)까지 저작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
100만 원(a) + 200만 원(b)×80%(c)-20만 원(d1)-30만 원(d2)=2,100,000원

고료(연재료)를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하면서 d1만 저작권자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 d2까지 부담하게 할 것인지
로 나누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a} + \left(\text{b} - \text{a} - \square - \square \right) \times \text{c} - \square - \text{d1} - \square = \text{저작권자 수익} \quad \text{a+(b-a)Xc-d1} \\
 & \hspace{10em} = \text{수익} \\
 & \text{a} + \left(\text{b} - \text{a} - \square - \square \right) \times \text{c} - \square - \text{d1} - \text{d2} = \text{저작권자 수익} \quad \text{a+(b-a)Xc-d1-d2} \\
 & \hspace{10em} = \text{수익}
 \end{aligned}$$

계산 예시

㉔ 저작권자의 고료(연재료)는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하고 본래 순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함께 부담했어야 했던 비용(d1)을 저작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
100만 원(a) + {200만 원(b)-100만 원(a)}×80%(c)-20만 원(d1)=1,600,000원

㉕ 저작권자의 고료(연재료)는 유료수익 비율 적용 전에 공제하고 본래 순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함께 부담했어야 했던 비용(d1)과 홍보비용 등 여타 비용(d2)까지 저작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
100만 원(a) + {200만 원(b)-100만 원(a)}×80%(c)-20만 원(d1)-30만 원(d2)=1,300,000원

$$\begin{aligned}
 & \text{a} + \left(\text{b} - \square - \square - \square \right) \times \text{c} - \text{a} - \text{d1} - \square = \text{저작권자 수익} \quad \text{a+bXc-a-d1} \\
 & \hspace{10em} = \text{수익} \\
 & \text{a} + \left(\text{b} - \square - \square - \square \right) \times \text{c} - \text{a} - \text{d1} - \text{d2} = \text{저작권자 수익} \quad \text{a+bXc-a-d1-d2} \\
 & \hspace{10em} = \text{수익}
 \end{aligned}$$

계산 예시

㉖ 저작권자의 고료(연재료)는 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에 공제하고 본래 순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함께 부담했어야 했던 비용(d1)을 저작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
100만 원(a) + 200만 원(b)×80%(c)-100만 원(a)-20만 원(d1)=1,400,000원

㉗ 저작권자의 고료(연재료)는 유료수익 비율 적용 후에 공제하고 본래 순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함께 부담했어야 했던 비용(d1)과 홍보비용 등 여타 비용(d2)까지 저작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
100만 원(a) + 200만 원(b)×80%(c)-100만 원(a)-20만 원(d1)-30만 원(d2)=1,100,000원

3. 유료수익 비율에 따른 변화

위에서 본 예시는 유료수익 비율을 80%로 전제했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료수익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유료수익 비율 50%와 20%를 적용했을 경우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산식	유료수익 비율(c)=80%	유료수익 비율(c)=50%	유료수익 비율(c)=20%
①	a+(b-d1)×c=수익	2,440,000	1,900,000	1,360,000
②	a+(b-a-d1)×c=수익	1,640,000	1,400,000	1,160,000
③	a+(b-d1)×c-a=수익	1,440,000	900,000	360,000
④	a+(b-d1-d2)×c=수익	2,200,000	1,750,000	1,300,000
⑤	a+(b-a-d1-d2)×c=수익	1,400,000	1,250,000	1,100,000
⑥	a+(b-d1-d2)×c-a=수익	1,200,000	750,000	300,000
⑦	a+b×c=수익	2,600,000	2,000,000	1,400,000
⑧	a+(b-a)×c=수익	1,800,000	1,500,000	1,200,000
⑨	a+b×c-a=수익	1,600,000	1,000,000	400,000
⑩	a+b×c-d1=수익	2,400,000	1,800,000	1,200,000
⑪	a+b×c-d1-d2=수익	2,100,000	1,500,000	900,000
⑫	a+(b-a)×c-d1=수익	1,600,000	1,300,000	1,000,000
⑬	a+(b-a)×c-d1-d2=수익	1,300,000	1,000,000	700,000
⑭	a+b×c-a-d1=수익	1,400,000	800,000	200,000
⑮	a+b×c-a-d1-d2=수익	1,100,000	500,000	-100,000

[별표4]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대리중개인 _____(이하 ‘대리중개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여줄 상대방(대리중개인)과 체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리중개업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할 수 없다. 포괄적 대리를 위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저작권법 제138조 제5호).

또한 저작권대리중개업과 관련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되는 금지행위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권리자가 직접 정하지 않고 대리중개업자가 정하는 행위, 대리중개의 대상 저작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래 발생할 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는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나아가 대리중개업자가 권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하는 행위도 ‘기타 금지되는 행위’로서 금지된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대리중개의 대상을 권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작물 중에서 특정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미래에 창작할 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 이후의 시점에 별도의 대리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나 요율은 권리자가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음악, 영상, 어문, 사진, 미술, 기타 분야의 대리중개 계약서 및 이용허락계약서)도 있으니 이를 함께 참고하여 사용해도 좋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대리중개계약서(권리자와 대리중개업자 간의 계약)와 이용허락계약서(권리자, 대리중개업자, 이용자 3인 간의 계약)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본계약서는 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므로 어떤 저작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작품명(제호)으로 특정할 수 있고 아직 제목이 확정 전이라면 ‘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첨] 문서 등을 통해 내용의 시놉시스나 줄거리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여 대상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 계약서는 소설의 웹툰화 등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 원저작물(가령 소설)이 있는 웹툰(=원작에 대해서 2차적저작물)에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원저작물 역시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원저작물을 표시해야 이 저작물이 어떤 원저작물에 기반한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다르다면 저작자를 표시할 필요도 있다.

핵심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중개를 ‘대리중개인’에게 위임하고, ‘대리중개인’은 이를 대리중개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 “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 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8.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리중개”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사용료”는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를 말한다.
12. “수수료”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대리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2조(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그대로 옮겼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핵심 제3조 (계약기간 등)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____년으로 한다.
- ②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 ④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1항에서 계약기간은 ‘__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더 짧은 주기(일, 주, 월 등)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항에서는 계약이 자동연장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해당 조항에 ‘서면’이라는 명시적 요구는 없으나, 계약서 제15조(부속 합의서 관련 조항)가 적용될 경우 서면 합의 방식이 증거 보존과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따라서 연장 합의는 증거를 명확히 남길 수 있는 형식(예: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에는 연장 기간, 조건, 변경 사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문구는 기존 계약의 조항(예: 대가 지급 방식, 저작물 활용 범위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단,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특정 조건(예: 대가, 기간 등)을 변경하기로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계약 조건은 합의 하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대리중개인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은 계약당사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제4항에서는 그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계약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동 조항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6조의 사항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핵심 제4조 (권한의 부여)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아래 표 중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며, 해당 항목의 독점 여부를 기재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의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위임하기로 선택한 항목에는 수수료율(사용료 중 대리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비율)을 기재한다. 여기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합의하여 정한다.

항목	국 내			국 외		
	위임여부	독점여부	수수료율(%)	위임여부	독점여부	수수료율(%)
출판						
전자책 발행						
온라인 서비스(인터넷 연재)						
영상화(애니메이션화)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실사화)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무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추가기재가능)						

제4조를 통해 부여하는 권한은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저작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임

(위임여부) 대리중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대리중개해 달라고 맡기는 행위는 위임의 일종이다. 따라서 ‘위임여부’에는 해당 권리를 대리중개인에게 맡길지 여부를 적으면 된다. 예를 들어, 출판권에 대해 국내에서 저작권대리중개를 위임할 것이라면, 비어있는 첫 번째 칸(국내-위임여부-출판)에 0를 표시하면 된다.

(독점여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대리중개인에게만 해당 권리에 대해 중개를 맡길 것이라면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다른 대리중개인을 통해서도 거래하고자 한다면 비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해당 칸에 0로 표시하면 된다.

(수수료율) 대리중개인에게 대리중개업무를 맡김으로써 주게 되는 수수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사용료 중 수수료로 대리중개인에게 지급할 비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적으면 된다. 이 ‘수수료(본 계약서 제2조 제12호)’는 저작물 이용 시 발생하는 ‘사용료(본 계약서 제2조 제11호)’와 구별된다. ‘수수료’는 대리중개인에게 저작권자가 지급하는 대가이고 본계약서 제4조에 의해 미리 결정한다. 사용료는 저작물을 이용한 자가 대리중개인 또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고 대리중개인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저작권자(권리자)가 사용료의 요율이나 액수를 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대리중개인이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정할 경우 포괄적 대리중개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중개인이 저작권자에게 미리 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을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즉 본 제4조에서 수수료를 미리 정한 것과 무관하게, ‘사용료’의 경우 저작권자가 사안마다 결정해야 한다.

(추가기재가능) 추가기재는 가능하나 포괄적 대리중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일체’와 같은 표현은 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는 ‘저작권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신탁관리업’에 속한다. 단순히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신고만 한 경우 포괄적 대리를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핵심 제5조 (저작권자의 권리 의무)

- ① ‘저작권자’는 본계약 체결 이후,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본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계약과 저촉되는 권리행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권자’는 본계약 체결 이후 ____일 이내에 대상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대리중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저작권자’는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대리중개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충실히 이를 제공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과의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에서는 ‘본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계약에 위반되지 않는 형태의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독점적으로 출판 대리중개 권한을 주었다면 이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출판에 대해 제3자와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지만 공연화에 대해서는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저촉되는” 계약의 범위는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중개 권한의 범위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2항에서 ‘자료’는 대리중개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의미한다.

핵심 제6조 (대리중개인의 권리 의무)

- ①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대리중개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제3자와 협상 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이용허락조건 및 사용료 등 계약의 교섭을 진행하고,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 ③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계약에 따른 대리중개 업무 처리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보고한다.
- ⑤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권자’에게 온전히 이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 ⑥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협의하여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등록·이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음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제3자와 계약을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조건(예: 계약기간, 이용허락 조건, 사용료 등)을 협상해야 한다. 또한 대리중개인은 제3자의 제안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저작권자가 협상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제2항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이고 대리중개인이 아니다. 즉 대리중개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대리인일 뿐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작권자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계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계약기간 중 대리중개를 통해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의 효력은 대리중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이에 제3항에서는 대리중개업이 저작재산권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항상 받도록 하였으며,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3항의 ‘서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면도 ‘서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4항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때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가 업무 처리 현황 보고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박스에 표시되었듯, ‘대리중개인’은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식재산권의 등록·이용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에서는 권리의 등록, 이용,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핵심 제7조 (수수료의 지급)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에게 사용료의 수령 권한을 부여한다.

‘저작권자’는 사용료 수령 권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정산의무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제4조의 수수료율에 따라 ‘대리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사용료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대리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소요되는 실제비용, 제3자에게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비용(중개수수료 등),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대리중개인’은 ____개월에 한 번씩 사용료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하 ‘정산금’)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1항은 대리중개인이 제3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대리중개인은 사용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만약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직접 수령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수령한 후 대리중개인에게 대리중개 수수료를 주어야 하고, 정산서 등을 제공하고 정산할 의무도 저작권자에게 있다. 반대로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사용료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면 대리중개인이 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사용료 수령 권한을 계약상 허용하더라도 대리중개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금을 수령하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제3항은 양 당사자가 대리중개인이 가져갈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비용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조항은 대리중개인이 사용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다. 대리중개인은 사용료에서 대리중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비용, 제3자에게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비용, 그리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기타 지출에 한 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리중개인이 임의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저작권자의 동의’는 명시된 공제 가능 범위 외의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사전에 합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제 범위나 항목을 달리 정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와 대리중개인에게 돌아가는 대리중개 수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면 합의’ 과정을 통해 명확히 합의하도록 했다. 이러한 비용 공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공제할 것인지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제4항에 따라, 대리중개인은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저작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박스 내용과 같이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수령하고 대리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정산하는 형식이라면 이 조항은 저작권자가 정산의무를 지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핵심 제8조 (정산 등)

① ‘대리중개인’이 ‘저작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의 대리중개에 따른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을 포함한 정산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 ‘대리중개인’은 사용료 내역, 수수료 계산 내역, 정산금 산정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항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특히 “해당 정산 주기에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는 문구는 정산금 지급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중개인이 정산 자료를 제공하여 저작권자가 대리중개 활동의 현황과 관련 수익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② 대상 저작물의 대리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비용은 ‘대리중개인’이 부담한다.

③ 제7조 제3항에 따른 서면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물을 제공하는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대리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리중개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7조 제3항에서는 서면합의로써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다른 비용이 있다면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핵심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는 대리중개인이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의 당사자인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을 대리중개하는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자와 계약하더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제1항). 또한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항).

제11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대리중개인’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②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리중개인’이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우에는 ‘대리중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계약기간 만료 등 이 계약의 종료 시 ‘대리중개인’의 귀책 사유로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환원되지 못할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제1, 2항에서는 대상 저작물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저작물을 제공한 저작권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그 원인 제공자가 대리중개인인 경우에는 대리중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정하였다.

제3항은 계약 종료 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항이다.

핵심 제12조 (원고의 반환)

-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대리중개인’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대리중개인’이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중개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중개인’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 2항은 계약 종료 시 ‘대리중개인’이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원고와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히 육필 원고나 원화의 소유권은 본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대리중개인은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자 자료의 경우에도 파기 후 서면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무단 사용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제1, 2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리중개인이 원고 반환을 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대리중개인이 원고 및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게 하고, 계약 종료 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대리중개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였다.

제13조 (대리중개인의 성과 존중 등)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본계약에 따라 이용하며 ‘대리중개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홍보자료 등을 작성한 경우 ‘대리중개인’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대리중개인’이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핵심 제15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계약 내용은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을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본계약은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체결한 후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항에서 부속합의서의 범위는 이 계약(=본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이 조항은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표시하여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상단에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시해야 한다.

핵심 제16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본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대리중개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대리중개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계약의 이행이 시작된 이후에 해제를 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제2항에서는 계약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의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7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핵심 제19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제20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대신 자문을 받거나, 수사·소송에 이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에 이용되거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싶지 않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남겨놓는 경우 예외 없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1, 2항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비밀유지의무와 별도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21조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대리중개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리중개 사업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대리중개인’이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핵심 제22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대리중개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대리중개인’은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항에서 ‘관할’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가 원칙인데, 합의하여 미리 재판받을 곳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업자 소재지로 미리 기재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구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대신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도 있다.

핵심 제24조 (설명 의무)

- ①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당사자가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검토 및 자문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제1항에 의해 대리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제시한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의무는 대리중개인이 부담한다. 저작권자가 요청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저작권자가 대리중개인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설명의무는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대리중개인은 저작권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15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25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대리중개인이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¹⁾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대리중개인”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1)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가 여럿이라면 저작권자 모두를 표시해야 한다.

[별표5]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_____(이하 '저작권자'¹⁷⁾이라 한다)와(과) _____(이하 '저작권자2'라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이 계약서는 하나의 저작물을 함께 저작하는 공동저작자 사이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동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부분은 양도가 가능하나, 공동저작자의 지위 및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이 계약서는 공동저작(창작) 과정을 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양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즉 1) 저작권이 발생한 이후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관계가 형성되거나, 2)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저작권이 발생한 이후 제3자에게 공동저작재산권의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가 다루고 있지 않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본계약서는 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므로 어떤 저작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작품명(제호)으로 특정할 수 있고 아직 제목이 확정 전이라면 ‘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첨] 문서 등을 통해 내용의 시놉시스나 줄거리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여 대상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 계약서는 소설의 웹툰화 등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 원저작물(가령 소설)이 있는 웹툰(=원작에 대해서 2차적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라면 원저작물 역시 표시가 필요하다. 원저작물을 표시해야 이 저작물이 어떤 원저작물에 기반한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핵심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자1’과 ‘저작자2’가 대상 저작물을 공동으로 저작하고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함에 있어 양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2조(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그대로 옮겼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3호는 저작권법에는 없는 용어이다.

제2호에 드러나듯이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만이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공동저작물 창작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작자로 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실무에서 저작권산권 지분 양도 계약 대신 공동저작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동저작권 귀속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 같은 이유로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제3호에는 대상 저작물이 만화나 웹툰 원고의 형태가기 때문에 ‘완전원고’ 조항이 별도로 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고, 각자 이바지한 부분(기여한 부분)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른 공동저작자가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공동저작자들은 자신의 기여분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완전원고’는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핵심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년/___회 차/대상 저작물의 연재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저작자’와 ‘저작자2’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년간 연장된다. 다만, ‘저작자’와 ‘저작자2’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 ④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작성된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따른다.

제1항은 공동저작물 계약의 기간을 규정하여 계약의 종료 시점 또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다. 여기에서 계약기간은 “__년”, “__회차”, “연재 종료일까지”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연재 방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가령 공동저작자들이 플랫폼 또는 CP사와 계약하여 작품을 연재하는 경우 연재 종료일은 이 계약에서 바로 확정되지 않고 연재계약서 등의 별도 계약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만약 공동저작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서 연재를 진행할 경우, 본 조에 연재 주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1주 1회 연재” 또는 “총 12회 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연장 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 관계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이 자동연장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연장 시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조건은 연장 전이라 할지라도 합의 하에는 변경할 수 있다. 즉 이 조항은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계약 조건을 다시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취지이고, 계약 갱신 시에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2항에서는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명시하도록 하여, 계약 연장 및 조건 변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증거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에는 연장 기간, 조건, 변경사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문구는 기존 계약의 조항(예: 대가 지급 방식, 저작권 활용 범위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단,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특정 조건(예: 대가, 기간 등)을 변경하기로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제2항의 '서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면도 '서면'에 해당하게 되었

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저작권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계약에 정해진 지분 등에 따라 저작권은 존속하게 된다. 이때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을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본 조항은 이러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저작권이 지분 등에 따라 존속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 등을 변경할 것이라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핵심

제4조 (‘저작자1’, ‘저작자2’의 창작 담당)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 중 아래 부분을 창작한다.

‘저작자1’:
‘저작자2’: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의 창작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한다.

③ ‘저작자1’과 ‘저작자2’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최근의 웹툰, 만화 저작 과정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글, 그림으로 이분화될 수도 있지만 세분화된 여러 단계에 얼마나 개입할지는 각기 다르다. 제1항에는 이러한 세분화된 작업 분야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작업을 얼마나 맡느냐에 따라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지분에 이를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은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업무 분배 과정에서 순서나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내용도 제1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핵심

제5조 (대상 저작물의 지분 등)

① 대상 저작물은 ‘저작자1’과 ‘저작자2’의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은 ‘저작자1’이 ____%, ‘저작자2’가 ____%의 지분으로 갖는다.

②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1’과 ‘저작자2’ 양자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지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저작자1’, ‘저작자2’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대상 저작물의 수익 배분은 제1항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즉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지분이 나뉘고, 특약이 없다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분이 나뉘고, 기여한 정도가 분명치 않으면 1/n(공동저작자의 총인원수)의 지분대로 나누어 갖는다. 특약 없이 계약하고자 한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제6조 (권리행사 등)

- ①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행사는 ‘저작자1’과 ‘저작자2’의 합의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그들 중에서 제1항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1항은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협력을 명시한 것이다. 본 조항에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공동저작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행사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2항은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및 제48조 제4항의 규정을 바탕으로, 공동저작자 간에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및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저작자들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그들 중에서 정할 수 있다.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은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권리행사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제한(예: 내부 합의에 따른 조건 또는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¹⁸⁾의 제3자(계약 상대방 등)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5조 제3항, 제48조 제4항). 따라서 공동저작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핵심 제7조 (원고의 인도)

-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에 맞추어 창작 담당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저작자1’과 ‘저작자2’는 공동창작이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온전하고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1항에서 합의해 두었던 완전원고 인도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완전원고의 인도 시기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 법적으로 ‘선의’는 ‘모름’을 의미하고, ‘악의’는 ‘알’을 의미한다. 즉 ‘선의의 제3자’는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의미한다.

제8조 (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 ① ‘저작자1’, ‘저작자2’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저작자’ 또는 ‘저작자2’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대상 저작물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③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한 자의 저작권 지분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저작인격권은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의 저작권 지분은 ‘저작재산권의 지분’으로 읽으면 된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하여야 하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본조 제1항은 이에 대한 확인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동의’를 요구하고 그 형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본조 제1항에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하여 ‘서면 동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핵심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②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저작자1’,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저작자1’, ‘저작자2’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해야 한다.

제9조는 공동저작자 서로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서로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2항은 공동저작물의 제호, 내용, 형식 등의 변경이 공동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여 저작자 간의 권리와 창작 의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보호하고, 저작물이 임의로 수정, 훼손,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12조 참조).

제3항은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3조)에 대한 확인 조항이다. 동의 없이 일부 공동저작자의 이름을 저작자 표기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공동저작자가 아닌 자(될 수 없는 자)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 ①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저작자’ 또는 ‘저작자2’는 자신의 책임 부분 이상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해당 비용을 채무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1조 (원고의 반환)

- ① 대상 저작물의 완전원고가 육필원고나 원화 등의 실물원고이고, 이를 대상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을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원고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원고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분리할 수 없음이 전제되나 이 계약서상 ‘완전원고’는 상대방이 자신이 맡은 부분을 창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최종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 가능할 수 있다. 제1항은 해당 완전원고를 작업한 저작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하도록 의무를 지운 규정이다.

제2항에 규정한 것처럼, 원고를 반환해야 하는 측이 원고 반환을 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공동저작자들이 서로의 원고 및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고를 반환하지 못한 측이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였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핵심 제13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자1’과 ‘저작자2’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계약 내용은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합의를 명시하도록 하여, 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증거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에는 계약의 조건과 변경사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핵심 제14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공동저작의 착수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의 착수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공동창작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공동창작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1.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5.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공동창작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행사는 양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

공동저작 착수 이후에 해제를 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2항에서는 공동저작이 착수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동저작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

제16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자1’ 또는 ‘저작자2’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고,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핵심 제17조 (성희롱 등의 금지)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제18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자1’과 ‘저작자2’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대신 자문을 받거나, 수사·소송에 이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에 이용되거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싶지 않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남겨놓는 경우 예외 없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1, 2항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비밀유지의무와 별도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핵심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자1’과 ‘저작자2’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자1’과 ‘저작자2’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자1’ 또는 ‘저작자2’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항에서 ‘관할’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가 원칙인데, 합의하여 미리 재판받을 곳을 정할 수 있다.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대신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도 있다.

제21조 (효력 발생)

본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1’, ‘저작자2’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저작자1”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저작자2”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별표6]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저작자_____(이하 ‘저작자’라고 한다)와(과) 발주자 _____(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이 계약서는 발주자가 출판만화 형태로 작가(저작자)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출판만화가 아니라 웹툰 형태로 작업을 의뢰한다면 ‘전자책 출판 계약서(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서)’를 참고하여, 출판권 관련 조항을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적합한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본계약서는 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므로 어떤 저작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작품명(제호)으로 특정할 수 있고 아직 제목이 확정 전이라면 ‘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첨] 문서 등을 통해 내용의 시놉시스나 줄거리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여 대상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 계약서는 소설의 웹툰화 등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 원저작물(가령 소설)이 있는 웹툰(=원작에 대해서 2차적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라면 원저작물 역시 표시가 필요하다. 원저작물을 표시해야 이 저작물이 어떤 원저작물에 기반한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핵심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의 기획에 따라 ‘저작자’가 창작한 기획만화인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제2조 (정의)

-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3.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4.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 5. “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6. “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 7.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 8. “완전원고”는 교정·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 9. “기획만화”란 발주자가 주도하여 미리 마련한 배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가가 작업을 맡아 제작하는 출판 형식의 만

화를 말한다.

본계약서의 기획만화는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만화 또는 캐릭터 등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2조(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그대로 옮겼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8, 9호는 저작권법에는 없는 용어이다.

제8호에는 대상 저작물이 만화나 웹툰 원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원고’ 조항이 별도로 있다. 출판만화를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교정과 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할 것이 기준이 된다.

제9호의 ‘본계약서의 기획만화는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한 만화 또는 캐릭터 등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가 창작한 기존 캐릭터나 만화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발주자가 만화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주도해 배경,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할 것을 권한다.

핵심 제3조 (계약기간 등)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 ② ‘저작자’와 ‘발주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____년간 연장된다. ‘저작자’와 ‘발주자’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합의가 없는 한 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발주자’의 권리는 제4조 제1항의 기간(양도기간)만큼 존속한다.

계약기간 중 발주자는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양도기간이 항상 일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래 제4조의 규정의 예시 중 계약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라면(즉 계약기간과 양도기간이 일치한다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저작재산권이 저작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에도 양도받은 저작물을 계속 활용하려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계약기간 종료 시, 발주자(사업자)는 원고 반환, 저작물 활용 중단, 저작재산권의 원상회복 등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다.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연장 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 관계의 지속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계약이 자동연장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연장 시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조건은 연장 전이라 할지라도 합의 하에는 변경할 수 있다. 즉 이 조항은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계약 조건을 다시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취지이고 계약 갱신 시에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2항에서는 서면으로 연장 합의를 명시하도록 하여 계약 연장 및 조건 변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증거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에는 연장 기간, 조건, 변경사항 등이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문구는 기존 계약의

조항(예: 대가 지급 방식, 저작물 활용 범위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단,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특정 조건(예: 대가, 기간 등)을 변경하기로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제2항의 ‘서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면도 ‘서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핵심

제4조 (저작권재산권의 귀속)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각 양도기간 동안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저작권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X)	양도기간 ¹⁾	비고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1) 예시) ① 제3조 제1항의 계약기간 동안 ②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 ③ 영구 등

②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발주자’에게 허락한 권리 외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③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와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핀오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자’와 ‘발주자’가 이들 권리에 대해 상대방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합의서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는 저작권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저작권재산권 양도에 대한 규정이다(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각 저작권재산권 종류 내에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고란을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발주자에게 허락된 권리 외의 모든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발주자는 이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허락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다. 허락되지 않은 권리(예: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정 매체에 대한 사용권 등)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저작자에게 남아 있다. 저작자는 계약에서 발주자에게 허락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제3항에서는 캐릭터 사용, 후속편, 후속 시즌, 시퀄이나 프리퀄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제5조 (권리의 등록)

① ‘발주자’와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양도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해제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 ____일 이내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말소하고, ‘저작자’에게 말소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변동에 해당하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 및 대항력이 발생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등 효과가 생긴다.

발주자는 양도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저작권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재산권 양도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소멸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¹⁹⁾ 이때 등록의 말소나 소멸등록은 원칙적으로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등록 말소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조 제3항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해제해서 양도한 권리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정했던 양도 기간을 앞당겨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지체없이/_일 이내에) 내에 저작권재산권 양도등록을 말소하거나 소멸등록을 해야 한다.

핵심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자’는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발주자’에게 완전원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완전원고의 내용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본계약 체결 이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저작자’는 해당 완전원고 수준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저작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은 저작자가 완전원고를 인도(=주는 것)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때 저작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완전원고를 인도하는 기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동의’는 사전에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는 인도 시기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발주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임의로 완전원고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19) 실무상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는 ‘소멸등록’(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계약 해제, 허위 등록,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소급해서 등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말소등록’으로 하고 있다. 해당 등록종에 설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멸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으나, 해지 등 계약기간 내에 권리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등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3항은 ‘발주자’가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출판물 초판을 발행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63조의2(출판권 설정 계약의 유효기간) 및 제58조 제1항(출판권 설정 계약의 효과)을 준용한 내용이다. 조항의 취지는 발주자가 계약 체결 당시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출판 및 활용을 약속한 점에 근거한다. 저작자는 출판을 통해 인지도 상승, 포트폴리오 활용 등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임의로 출판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면 계약 당시의 기대와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세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출판 지연은 저작자의 수익 발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기한 내 출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63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을 경우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한다. 다만 본 조항에서는 특약을 통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공란(‘___개월’)으로 남겨둬으로써 유연하게 하였다.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판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일을 변경해야 하며, 동의 없이 출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핵심 제7조 (작품의 검수)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정요구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합리적인 수정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정을 요구할 때 수정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서면 형식으로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수정 요구는 시나리오, 콘티, 스케치(선화 이전), 선화, 채색 등 창작 단계를 막론하고 하나의 부분에 대하여 ___회 이내로 한다.

④ ‘저작자’는 제3항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저작자’가 창작한 부분의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수 회신을 해야 한다. ‘발주자’는 합격 검수를 마친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⑤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발주자’는 추가로 상당한 대가의 지급을 하고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3항 관련, 통상의 경우 하나의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였듯, 발주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화의 기획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최초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지워선 안 되고, 무리하게 짧은 기간 내에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두었다.

제2항에서는 수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면 형식으로 정리해 교부하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 수정 요구 횟수를 제한한 것은 무한정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저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 수정 요구를 일정 횟수로 제한하여 창작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검수 완료 이후 저작자가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한 경우 이전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했던 사항을 다시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제4항에서는 합격 검수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핵심 제8조 (대가의 지급)

제8조는 다음 중 _____방식으로 한다.

(일시불 방식)

① ‘발주자’는 이 계약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저작자’에게 _____원을 지급한다. ‘발주자’는 본조의 대가를 ‘저작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계약금 : 계약체결시 _____ 원

중도금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 원

잔금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 원

(또는) 잔금 : 최종 원고 인도 후 _____일 이내에 _____ 원

(인세 지급 방식)

①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저작자’는 ‘발주자’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 X 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 X 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 X 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 X 판매부수 ()

☐ 기타 _____

② ‘발주자’는 _____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저작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③ ‘저작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_____%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___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자’가 지급받은 저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⑤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_____부로 정한다. ‘발주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초판 제1쇄 및 이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의 선급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저작자’와 ‘발주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⑦ ‘발주자’가 ‘저작자’에게 본조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⑧ ‘저작자’가 제7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발주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⑨ ‘발주자’는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인세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저작자’가 제9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인세 지급 방식) 제1항에서 발행부수 내지 판매부수는 출판 및 정산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작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를 주도록 정하였다.

(인세 지급 방식) 제4항에서 ‘선급금’은 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미리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의 일부를 의미하며, 선급금이 저작권 사용료의 예상 지급액을 초과하더라도 저작자는 초과분(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에게 선급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계약 종료 후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실무적으로, 일부 사례에서는 선급금이 저작권 사용료와 무관하게 계약금의 성격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발주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__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계약금은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를 통해 선급금과 저작권 사용료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차액 반환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인세 지급 방식) 제5항은 초판 제1쇄 발행부수를 정하고, 발행 후 지급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에서 지급된 선급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공제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할 수 있다’ 대신 ‘공제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반대로, 선급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로 수정할 수 있다: “‘발주자’는 이후 대상 저작물 초판 제1쇄 및 이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4항의 선급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선급금 공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인세 지급 방식) 제6항은 출판만화를 전제로 하여 검인지 부착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63조의2 및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경우 출판물에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인지를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를 특약으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 없이 검인지를 생략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세 지급 방식) 제7항은 ‘발주자’가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와 인세 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공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자가 출판물의 발행 현황과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세 지급 방식) 제8항은 ‘저작자’가 정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발주자’가 정산서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다만,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발주자가 정산 자료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핵심 제9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 ① 본 조는 제8조의 인세 지급방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출판물의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쇄가 진행되는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수량과 시기 등 중쇄 계획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출판물의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 ⑤ ‘발주자’는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중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쇄의 시기, 수량,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계약의 잔여기간, ‘발주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발주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¹⁾

1)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6항의 대상으로 한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때 인세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후의 수익 발생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시금을 대가로 한 영구 양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까지 제9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1항에 이를 명시하였다.

제2항에 의해 발주자는 구체적인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결정 내용이 저작자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제3항은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 및 판매 방법 등에 대해 발주자가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쇄가 진행될 경우 저작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발주자가 중쇄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저작자와의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저작자에게 미리 중쇄 계획을 알리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반면 제4항은 중판(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재출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자와 발주자가 사전에 합의해야 함을 규정한다. 중판은 기존 출판물의 내용에 변경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중판을 임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작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사전에 합의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동일성유지권은 인세 지급 방식이 아니더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 계약서 제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중판의 경우, 그 대가 지급 방식이 어떠한 간에 이 계약서 제11조 제3항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제10조 (저작물의 보증 등)

-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소재, 내용 등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관여한 부분으로 인하여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발주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저작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계약 이전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이 없고, 이 계약기간 중에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1, 2항에서는 대상 저작물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저작물을 제공한 저작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그 원인 제공자가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였다.

제3항은 발주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발주자의 권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저작자는 계약 이전과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처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하

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제한되는 행위는 발주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한정된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는 저작자가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기간을 ‘계약기간 이전과 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하였다.

핵심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저작자’가 지정하는 이명(필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는 발주자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자로부터 발주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여전히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항 관련, 성명표시권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항은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조항이다.

핵심

제12조 (교정과 편집)

① 대상 저작물의 교정과 편집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저작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정·편집 수행자의 상대방은 교정·편집 수행자에게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자신이 수행한 교정·편집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교정 및 편집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지가 없는 사소한 수준이어야 한다. 교정 및 편집 과정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조 제2항에서는 교정 및 편집 후 저작자의 확인을 구하도록 정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존중하고, 저작물이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제13조 (저작자에 대한 증정보 등)

① ‘발주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___부, 중쇄 발행 시 ___부를 ‘저작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보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주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 구입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된다.

핵심

제14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발주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성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 2항은 계약 종료 시 발주자가 저작자로부터 받은 원고와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특히 육필 원고나 원화의 소유권은 본래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자 자료의 경우에도 파기 후 서면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무단 사용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제3항에서는 제1, 2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발주자는 원고 반환을 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항은 발주자가 원고 및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게 하고, 계약 종료 후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다. 다만 발주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였다.

핵심

제15조 (권리 소멸 후의 배포)

① ‘발주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발주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 물량을 ___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주자’는 제8조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금(제8조 인세 지급 방식일 때)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5항후문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발주자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계약기간 내 발행된 도서 재고 물량에 대한 배포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규정이다. 출판권이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으나,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거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1조 참조). 따라서 계약기간 내 합법적으로 발행된 도서의 재고에 대해서는 특약에 따라 일정 기간(조항에서 ‘___개월’) 동안

배포를 허용하였다. 재고 배포에 대해 발주자는 제8조에서 정한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 선급금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제8조 제5항 후문을 준용하여 배포에 따른 추가 저작권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는 배포 기간을 한정하고, 지급된 대가에 상응하는 복제물만 배포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발주자의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심

제16조 (발주자의 성과 존중)

① ‘저작자’는 저작물을 구성하는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 등 출판물의 형식에 대한 ‘발주자’의 성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저작자’가 이 계약이 종료된 후 ‘발주자’가 구성한 제1항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발주자’가 별도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저작자’와 ‘발주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핵심

제18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

① ‘저작자’와 ‘발주자’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계약 내용은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을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본계약은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체결한 후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불공정하게 변경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항에서 부속합의서의 범위는 이 계약(=본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다. 이 조항은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때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표시하여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계약 변경이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상단에 본계약과의 연관성을 명시해야 한다.

핵심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자’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창작의 착수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창작의 착수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출판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 회생, 파산, 회사정리,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 고의적인 30일 이상의 계약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출판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창작 착수 이후에 해제를 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2항에서는 창작 착수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출판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0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

제21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자연재해, 전쟁, 내란, 폭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작자’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쌍방이 서면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핵심 제22조 (성희롱 등의 금지)

- ① ‘저작자’와 ‘발주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의 업무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 등 관련자로부터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이를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제23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자’와 ‘발주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대신 자문을 받거나, 수사·소송에 이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에 이용되거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싶지 않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남겨놓는 경우 예외 없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1, 2항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비밀유지의무와 별도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24조 (‘저작자’의 정보 이용)

‘저작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 따른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의 공개 또는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주자’가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핵심 제25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자’와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술인고용보험)

- ① ‘발주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발주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자’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저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등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계약의 저작자는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용역을 수행한 자이므로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

제27조 (분쟁 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자’와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자’ 또는 ‘발주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항에서 ‘관할’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가 원칙인데, 합의하여 미리 재판받을 곳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업자 소재지로 미리 기재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구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대신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도 있다.

핵심 제28조 (설명 의무)

- ①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자’가 ‘발주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별개로, ‘발주자’는 ‘저작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당사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검토 및 자문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제1항에 의해 발주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제시한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의

무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저작자가 요청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저작자가 발주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설명의무는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저작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15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29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자’, ‘발주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자”¹⁾
성 명(이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발주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1)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자가 여럿이라면 저작자 모두를 표시해야 한다.

[별표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사업자 _____(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는(은) (기획만화 계약서(이하 ‘원 계약’) / 원 계약 없는) 목적물인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다.

원 계약의 유무(○ / ×)

계약명:

계약체결주체:

계약일시: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허락받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같은 조 제2, 3항).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양도된 범위의)저작재산권을 가져가게 되는 반면,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용허락은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고,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계약 상대방 외에 다른 이에게도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다. 즉, 저작재산권자가 독점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저작재산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²⁰⁾

이용허락의 권리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한정되며, 제3자가 해당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여전히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므로 저작재산권자만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저작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용허락을 받았을 뿐이라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저작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계약서는 기획만화 계약서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작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재계약서 등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만화 계약서’ 대신 원 계약이 될 계약서의 종류를 대신하여 적시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원 계약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조항들(예: 성희롱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 계약 없이 이 계약서를 활용하려면 다른 유형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본계약서는 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므로 어떤 저작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작품명(제호)으로 특정할 수 있고 아직 제목이 확정 전이라면 ‘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첨] 문서 등을 통해 내용의 시놉시스나 줄거리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여 대상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 계약서는 소설의 웹툰화 등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 원저작물(가령 소설)이 있는 웹툰(=원작에 대해서

20) 이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4종 표준계약서’로 저작재산권 전부양도·일부양도·독점적이용허락·비독점적이용허락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도 좋다.

2차적저작물)에 관해 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원저작물 역시 표시가 필요하다.²¹⁾ 원저작물을 표시해야 이 저작물이 어떤 원 저작물에 기반한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다르다면 저작자를 표시할 필요도 있다.

핵심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원 계약”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5. “총 매출액”은 본계약에서 허락되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으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6.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2조(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제3, 4호)는 저작권법을 그대로 옮겼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21) 소설을 웹툰화하여 그 웹툰에 관해서 본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① 원계약의 대상 저작물의 원저작물인 소설
② 원계약의 대상 저작물인 웹툰(=이 계약서상의 대상 저작물)
가운데 이 계약서는 ②의 웹툰에 대해서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허락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웹툰 각색 과정에서 디자인된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굿즈) 제작의 경우 ①의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②의 웹툰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계약서처럼 웹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품을 제작할 수 있다. 반면 ①의 소설을 기초로 한 연극을 만들고 싶다면 ①의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해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웹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원저작물인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이용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 제3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개월 / 대상 저작물의 ___회 연재 종료일 / 대상 저작물의 최종화 공개
일로부터 ___개월 / 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 ②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그 사업화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
서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3조 제2항 관련 사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본계약서의 효력 유지여부가 변동되므로 “저작권자”는 제7
조 제3항에 따른 서면 동의 시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③ 부득이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의 사전 서면 동
의를 얻기 전에 제3자와의 계약기간이 이 계약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기간, 대상 저작물의 특정 회차 연재 종료일, 최
종화 공개일,²²⁾ 특정 날짜 등)을 제공하여 계약 당사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계약기간 종료 시, 사
업자는 저작물 활용 중단 등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함부로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지만 많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은 또 다른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한다. 가령 저작재산권자가 플랫폼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허락하면 플랫폼이 그 권리에 기
초해서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서는 사업자가 제3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했다. 본조 제2항은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사업화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계약의 사업화 완료를 위한 범
위 내에서만 본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해당 제3자와의 사업화 계약과 무관한 추가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
는다.

제3자 계약으로 인해 본계약의 효력이 장기화되면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된 새로운 협상이나 라이선스 계
약 체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와 사업자 사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사업자 역시 본조 제3항
에 따라 이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와 사업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저작권자는 제7
조 제3항의 사전 서면 동의 시에는 주의 깊게 서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항의 ‘서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면도 ‘서면’에 해당하게 되었
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22) 이때 제1항에서 최종화 연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연재계약이 원 계약이라면 최종화 연재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이미 방
지할 수 있으므로 ‘최종화 공개일’로 해도 무방하다. 원 계약이 없거나, 연재계약 당시 최종화 연재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면 ‘최종화 공개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핵심 제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

- ① ‘저작권자’는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 효력 기간 동안 아래 표 중 ○로 선택한 항목에 관련된 2차적저
작물작성권의 이용을 허락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이용을 허락한 항목에 대
해서는 (저작권자:사업자)의 형식으로 분배 비율을 기재한다.

	국내		국외		
	허락여부	분배비율	지역 또는 언어	허락여부	분배비율
영화화(애니메이션화)					
영화화(영화, 드라마 등)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 (무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번역저작물					
(추가기재가능)					

분배 비율 결정 시 ①사업자가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와 ②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정하십시오.

- ② 제1항의 이용허락은 (독점적 / 비독점적)으로 한다. 항목별로 독점/비독점을 달리할 경우, ‘허락여부’란에 독점, 비독
점을 별도로 기재한다.
- ③ 제2항의 이용허락을 ‘독점적’으로 한 경우, ‘저작권자’는 본계약 체결 이후,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본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계약과 저촉되는 권리행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핀오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1항 표의 ‘지역 또는 언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활용하는 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국가 등 지역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언어로 한정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용허락은 배타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 독점 여부의 표기가 필요하다. 독점적 이용허락

의 경우 권리를 부여받은 사업자만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동일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없다.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권자는 동일한 권리를 여러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3항은 제2항에서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허락한 경우, 저작권자가 본계약과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저작권자는 이 계약과 충돌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이 계약에 따라 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다시금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거나 스스로 이를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한 다른 종류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스스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다.

작품 자체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이므로 제4항에서는 작품 외의 캐릭터 사용, 후속 시즌, 시퀄이나 프리퀄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핵심 제5조 (저작권의 귀속)

- ①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이 계약에 따라 별도로 작성되는 계약서 및 저작권법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
- ② 제1항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사업자’에게 허락된 권리만을 갖는다.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권리는 제4조에서 이용을 허락한다고 명시한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권리에 한정된다. 사업자가 그 외 유형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의 합의 하에 추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조 (상표등록 등)

- ① ‘사업자’는 이 계약상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록은 ‘저작권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에 따른 비용은 합의하여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권리는 이 계약기간 중 이 계약상 업무를 위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표, 로고,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의 등록 절차와 이용 방식을 규정한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사업자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본 조항은 사업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이용하여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핵심 제7조 (권리의 행사)

- ①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업자’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업무를 처리하며 ‘저작권자’를 위하여 최선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저작권자’에게 보고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아무런 상황 공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에 제2항에서는 반드시 사업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 과정을 저작권자와 공유하도록 하였고, 제3자와 협상을 할 경우에도 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제3항은 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제3자와 계약을 통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여, 저작권자가 제3자와의 계약 조건 및 권리 행사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작권자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계약서와 같이 계약기간이 제3자와의 계약으로 연장될 수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무적으로 사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자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조 제3항에서는 그럴 수 없도록 계약서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저작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항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의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통제 권한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업무 처리 현황”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진행 상황, 제3자와의 협상 및 계약 체결 내역, 상표나 디자인 등록 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보고 범위는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업무 처리 현황 보고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 제8조 (수익 분배 등)

- ① ‘사업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익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 ②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익분배 및 공제범위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손 매출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본조의 수익배분을 매 ____월마다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금원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다.

제2항은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수익분배와 순 매출액 산정의 공제 범위를 명확히 합의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계약서에서는 ‘총 매출액’만을 정의하였고 ‘순 매출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도록 남겨두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총 매출액’에서 ‘순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 공제할 항목을 양측이 서면 합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핵심 제9조 (정산 등)

- ①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8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사업자’는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제1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 이용 내용, 대가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 현황과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항에서는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료를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정산 내역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저작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정산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정”은 사업자가 자료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법령 기타 계약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및 이를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③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1항에서는 창작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고, 제2항에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령 마케팅(홍보)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이용료 등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저작권자의 역할은 원저작물(대상 저작물)을 저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저작물 창작 외에 필요한 비용을 저작권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려면 제3항과 같이 별도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핵심 제11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는 사업자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정이 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앞서 본 것처럼 기획만화 계약서가 원계약서로 있을 것을 염두에 두었고, 표준계약서 중 기획만화 계약서의 경우 저작자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저작자’임을 전제로 하였다. 만약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면 이 조문에서 ‘저작권자’는 ‘저작자’로 수정하여야 한다.

핵심 제12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대상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용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 1. 회생, 파산, 회생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 5. 고의적으로 30일 이상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계약이행 이후에 해제를 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2항에서는 계약이행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③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대신 자문을 받거나, 수사·소송에 이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에 이용되거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싶지 않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남겨놓는 경우 예외 없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1, 2항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비밀유지의무와 별도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15조 (분쟁 해결)

① 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항에서 ‘관할’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가 원칙인데, 합의하여 미리 재판받을 곳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업자 소재지로 미리 기재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구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대신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도 있다.

핵심

제16조 (설명 의무)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당사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검토 및 자문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제1항에 의해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제시한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저작권자가 요청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설명의무는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15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17조 (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원 계약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원 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원 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

원 계약 없이 체결하는 경우 제17조(기타)는 삭제해도 된다.

원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넣는 조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¹⁾

성 명(이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기 명 날 인 : _____(인)

입 금 계 좌 :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 (인)

1)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가 여럿이라면 저작권자 모두를 표시해야 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저작권자¹⁾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사업자 _____(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는(은) (기획만화 계약서(이하 ‘원 계약’) / 원 계약 없는) 목적물인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원 계약의 유무(○ / ×)

계약명:

계약체결주체:

계약일시: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이 계약서는 저작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재산권 중 하나이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의 경우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과는 달리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저작재산권이 본래의 저작권자에게 남지 않고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수인은 제3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경우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만 양도할 수도 있다.²³⁾

이 계약서는 기획만화 계약서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작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재계약서 등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만화 계약서’ 대신 원 계약이 될 계약서의 종류를 대신하여 적시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원 계약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조항들(예: 성희롱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 계약 없이 이 계약서를 활용하려면 다른 유형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본계약서는 저작물에 관한 계약이므로 어떤 저작물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작품명(제호)으로 특정할 수 있고 아직 제목이 확정 전이라면 ‘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첨] 문서 등을 통해 내용의 시놉시스나 줄거리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여 대상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이 계약서는 소설의 웹툰화 등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인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만약 원저작물(가령 소설)이 있는 웹툰(=원작에 대해서 2차적저작물)에 관해 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원저작물 역시 표시가 필요하다.²⁴⁾ 원저작물을 표시해야 이 저작물이 어떤 원저작물에 기반한 것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저작자가 다르다면 저작자를 표시할 필요도 있다.

23) 이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4종 표준계약서’로 저작재산권 전부양도·일부양도·독점적이용허락·비독점적이용허락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도 좋다.

24) 소설을 웹툰화한 대상 저작물에 관해서 본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① 원계약의 대상 저작물의 원저작물인 소설
② 원계약의 대상 저작물인 웹툰(=이 계약서상의 대상 저작물)
가운데 이 계약서는 ②의 웹툰에 대해서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즉 이 계약은 ①의 소설에 대한 2차적저작물인 ②가 원저작물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양도계약이다.

핵심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선금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3. “원 계약”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5.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6. “총 매출액”은 본계약에서 양도되는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하는 총 합계 금액을 말한다.
7.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2조(정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제4, 5호)는 저작권법을 그대로 옮겼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핵심 제3조 (계약기간)

-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__개월 / 대상 저작물의 __회 연재 종료일 / 대상 저작물의 최종화 공개일로부터 __개월 / __년 __월 __일 / 영구)까지로 한다.
 - ② 이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에 한하여 그 사업화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 제3조 제2항 관련 사업자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본계약서의 효력 유지여부가 변동되므로 ‘계약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③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사업자’는 제2항 중 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효력이 유지되는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저작권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수하고, 저작권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기간, 대상 저작물의 특정 회차 연재 종료일, 최종화 공개일,²⁵⁾ 특정 날짜 등)을 제공하여 계약 당사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계약기간 종료 시 사업자는 저작물 활용 중단

25) 이때 제1항에서 최종화 연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연재계약이 원 계약이라면 최종화 연재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이미 방지할 수 있으므로 ‘최종화 공개일’로 해도 무방하다. 원 계약이 없거나, 연재계약 당시 최종화 연재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면 ‘최종화 공개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등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다. 만약 계약기간을 “영구”로 설정한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등 계약을 무효로 돌리지 않는 한, 저작권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양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양도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많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은 또 다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한다. 가령 저작재산권자가 플랫폼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면 플랫폼이 그 권리에 기초해서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본조 제2항은 계약기간 중에 체결된 제3자와의 사업화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계약의 사업화 완료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본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해당 제3자와의 사업화 계약과 무관한 추가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3자 계약으로 인해 본계약의 효력이 장기화되면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된 새로운 협상이나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와 사업자 사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사업자 역시 본조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와 사업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핵심 제4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① ‘저작권자’는 ‘사업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 효력 기간 동안 아래 표 중 ○으로 표시한 항목에 관련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한다(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 항목은 표에 항목을 추가한다). ‘수익 분배 방식’으로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사업자)의 형식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기재한다.

	국내		국외		
	허락여부	분배비율	지역 또는 언어	양도여부	분배비율
영화화(애니메이션화)					
영상화(영화, 드라마 등)					
공연화(뮤지컬, 연극 등)					
상품화(유형물)					
이모티콘, NFT 등 상품화 (무형물)					
게임화					
어문저작물작성					
음성저작물작성					
음악저작물작성					
광고					
번역저작물					
(추가기재가능)					

‘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재양도 금지에 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시)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양도받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3자에게 재양도할 수 없다.

②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에 대한 권리, 속편, 후속 시즌, 스핀오프(spin-off), 프리퀄(prequel), 시퀄(sequel)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는 별도로 정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대상 저작물과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와 수익분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분배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 하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활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수익분배를 정할 수 있다.

표에 명시된 항목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표에 추가할 수 있다.

수익분배를 대가지급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제1항의 표에는 “(저작권자:사업자)” 형식으로 분배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가령 60:40).

제1항 표의 ‘지역 또는 언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활용하는 콘텐츠의 활용범위를 국가 등 지역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언어로 한정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재양도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박스 안의 내용과 같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재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저작권자가 양수인(사업자)의 사업 능력이나 브랜드 가치 등을 신뢰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였는데 저작권자가 원치 않는 제3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재양도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제2항에서는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사용, 후속편, 후속 시즌, 시퀄이나 프리퀄 등 관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핵심 제5조 (권리의 등록)

①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등록 등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해지·해제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 ___일 이내에)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지체없이’가 원칙이나, 합의에 따라서 일 수를 정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의 대상이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저작권자가 다른 사업자와 이중으로 동일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²⁶⁾ 하지만 여기서의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은 양도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양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둔 것이다.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소멸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²⁷⁾ 이때 등록의 말소나 소멸등록은 원칙적으로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등록 말소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조 제3항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해제해서 권리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정했던 기간을 앞당겨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지체없이/_일 이내에) 내에 양도등록을 말소하거나 소멸등록을 해야 한다.

26) 동일하지 않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양도는 이중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가령 영화화를 위한 권리를 A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드라마화를 위한 권리를 B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면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양수한 권리는 성질이 다르다. 이 경우 A 사업자와 B 사업자는 양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서로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다.

27) 실무상 계약기간 만료나 해지는 ‘소멸등록’(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계약 해제, 허위 등록,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소급해서 등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말소등록’으로 하고 있다. 해당 등록종에 설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멸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으나, 해지 등 계약기간 내에 권리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등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핵심 제6조 (대가의 지급)

제6조는 다음 중 _____방식으로 한다.

(일시불 방식)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_____원을 지급한다. ‘사업자’는 본조의 대가를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②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계약금 : 계약체결시 _____ 원

중도금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 원

잔금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 원

(또는) 잔금 : 최종 원고 인도 후 _____일 이내에 _____ 원

(수익 분배 방식)

① ‘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수익 분배에서 공제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의 ‘저작권자’가 지급받은 추가 수익의 합계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사업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행사에 따라 제3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수익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분배한다.

③ ‘사업자’가 직접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체적인 수익분배 및 공제범위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순 매출액 산정시 공제되는 범위 또는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본조의 대가의 지급을 매 _____월마다 진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금원을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다.

⑤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출 내역, 수익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⑥ ‘저작권자’가 제5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 자료(관련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⑦ ‘사업자’는 매출 내역, 수익 계산 내역, 수익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저작권자’가 제7항의 기간 동안 장부 또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6항 제2문은 본항에도 적용된다.

(수익 분배 방식) 제1항에서 ‘선급금’은 수익분배에서 공제하는 현장 실무를 고려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약 사업자가 수익분배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 규정은 “‘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_____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수익 분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고치면 된다.

(수익 분배 방식) 제3항은 수익 분배와 순 매출액 산정의 공제 범위를 명확히 합의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계약서에서는 ‘총 매출액’만을 정의하였고 ‘순 매출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도록 남겨두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총 매출액’에서 ‘순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 공제할 항목을 양측이 서면 합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때 ‘서면’에 관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서면도 ‘서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

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수익 분배 방식) 제5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매출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 현황과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익 분배 방식) 제6항에서는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료를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정산 내역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저작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정산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정”은 사업자가 자료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법령 기타 계약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핵심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는 사업자가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사정이 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앞서 본 것처럼 기획만화 계약서가 원 계약서로 있을 것을 염두에 두었고, 표준계약서 중 기획만화 계약서의 경우 저작자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저작자’임을 전제로 하였다. 만약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면 이 조문에서 ‘저작권자’는 ‘저작자’로 수정하여야 한다.

핵심 제8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해지·해제, 합의 해지·해제할 수 있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이 더 이상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4호의 경우 영구 양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회생, 파산, 회생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 2. 발행한 어음, 수표가 지급 거절되는 경우
- 3.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4.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6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 5. 고의적으로 30일 이상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6. 작품 표절,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손해, 범죄 등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계약 이행 이후에 해제를 할 경우 기존에 서로 주고받은 채무이행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여러 후속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조 제2항에서는 계약 이행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해지·해제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법정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 합의 하에 해지·해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I. 표준계약서 개론 참고).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한다.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통지할 때 활용하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3항 제6호는 작품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법원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법원 판결은 예시임). 마찬가지로 해지를 통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기본 원칙을 계약에 명시한 것이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손해를 입힌 당사자(=귀책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해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등)

- ①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③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공개·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대신 자문을 받거나, 수사·소송에 이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에 이용되거나(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등을 포함함),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싶지 않다면 두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만을 남겨놓는 경우 예외 없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1, 2항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3항은 비밀유지의무와 별도로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의하여 취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11조 (분쟁 해결)

- ① 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항에서 ‘관할’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가 원칙인데, 합의하여 미리 재판받을 곳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업자 소재지로 미리 기재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형태의 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요구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대신 특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도 있다.

핵심 제12조 (설명 의무)

-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명과 별개로,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당사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검토 및 자문 시간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제1항에 의해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제시한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저작권자가 요청하거나 수정한 내용은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하므로 설명의무는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15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13조 (기타)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원 계약서에 따른다.
- ② 이 계약과 원 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원 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

원 계약 없이 체결하는 경우 제13조(기타)는 삭제해도 된다.

원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넣는 조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년 __월 __일

“저작권자”¹⁾

성 명(이명):

생 년 월 일:

주 소:

기 명 날 인: _____(인)

입 금 계 좌:

“사업자”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_____ (인)

1)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가 여럿이라면 저작권자 모두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 개론

1. 저작권의 개념

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이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저작권이 다른 산업재산권과 구별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저작권은 등록이나 출원이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무방식주의). 또한 창작을 보호하기에 저작‘인격권’을 갖는다는 점도 다른 산업재산권과 구별된다.

참고판례 1 -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1)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이를 창작한 사람 등이 갖는 권리를 총칭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갖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의미하며, 저작권의 근거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참고] 저작권과 구별 개념

1. 소유권 : 저작권은 정신적 창작활동인 저작물에 대한 ‘무형’의 권리다. 따라서 ‘유형’의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는 구별된다. 예컨대 미술품을 구매하여 그 작품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저작자인 작가에게는 여전히 ‘저작권’이 남아 있다.

2. 초상권 :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권리로,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말한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초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판례 1 - 초상권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 인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 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3. 퍼블리시티권 : 이른바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권리라고 불리는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판례는 영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BTS(방탄소년단) 구성원들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수록한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대법원2020.3.26.자2019마6525결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관

련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규정이 새로 입법되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2021. 12. 7. 개정)

2)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이러한 표현에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누가 표현을 하더라도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²⁸⁾

현실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수준의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과 구체화 된 정도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이면 몇 글자로 구성되었는지, 회화 저작물일 때 사용된 선의 개수나 표현의 자세함, 창작된 분량의 양 등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 부분은 작가들의 감각과는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다. 창작자의 변찍이는 천재성은 구체화 된 부분보다는 소재나 플롯 등 저작권 법리상 아이디어 부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표현’에만 미치고 그 소재가 된 ‘아이디어’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대법원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2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판결. 여행책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인데, 유사한 부분이 여행지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분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이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기획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9. 12. 1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일지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²⁹⁾

참고판례 1 -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참고판례 2 - 어문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사상이나 주제는 일반적으로 구체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에 포함된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려면, 그 사상이나 주제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사상이나 주제가 구체화되는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16757 판결)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특정 표현에 대한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과 이념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할지 여부와 저작물로 인정하더라도 배타적 보호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적정책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참고판례 2 -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존 인물의 캐리커처는 그 인물의 외관상 특징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고, 그 표현에 있어서 작성자만의 창조적 개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3고정2795 판결, 이른바 “송해 캐리커처 사건”)

참고판례 3 - 유명건축물을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도록 변형해 만든 모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참고] AI가 만든 산출물의 저작권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 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AI 산출물에 수정·증감 또는 편집·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적인 기여가 부가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만화 “새벽의 자리야”의 저작권 등록 사건에서, 이미지 부분은 생성형 AI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므로 이미지 부분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신청인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인 텍스트(문학작품), AI로 생성된 그림을 선택, 배열 및 조정한 것(편집저작물)에 대한 것만 저작물 등록을 인정했다.

AI와 저작권 관련해 정리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기획하여 발행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자료>발간자료>조사연구)

29)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³⁰⁾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있다.

저작물의 예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1.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 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악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가.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이나 시, 강연, 연설,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다만, 단순한 표어,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제호 등은 어문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만화의 경우 문제 된 만화 제작과 만화 제작을 위해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 등을 먼저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 등은 별개의 어문저작물로 볼 수 있다. 이때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를 바탕으로 제작된 만화는 근거가 된 만화 시나리오 등의 2차적저작물이 된다.

한편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를 제작한 작가, 즉 스토리 작가와 작화를 한 작가가 다른 경우 저작권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진다.

만약 스토리 작가와 만화 작가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긴밀히 협업하여 창작이 진행되었다면, 완성된 만화는 두 작가의 공동저작물이 되어, 두 작가 모두 공동저작자로서 만화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만화 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 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가가 만화 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 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 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³¹⁾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는 이유는 완성된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화가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와 작화작가 모두 완성된 만화의 저작권자이지만, 만화가 만화 시나리오에 기초한 2차적

30) 미술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만화, 삽화 등 형상이나 색채 등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한편 대법원은 서체파일에 대하여 미술저작물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99다23246판결 참고).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저작물로 인정되면, 만화 스토리 작가는 어문저작물인 만화 시나리오에만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은 작화 작가에게만 귀속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동창작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해두는 것이 좋다.

관련판례 1 - 만화 스토리 작가와 작화 작가 사이의 관계

[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등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제1호)되지만, 공동으로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이상 그 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자 중 1인 또는 그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만화 스토리 작가가 스토리를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고 만화가는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는 등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를 완성한 사안에서, 그 만화는 만화 스토리 작가와 만화가가 이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

[3]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로서,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그 표현상의 본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에 수정, 증감, 변경 등을 가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사람이 기존의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느껴서 알 수 있는 별개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관여자들이 그 작성에 기여하는 정도, 작성되는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그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2차적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만화저작물의 경우 만화 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 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가가 만화 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 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 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4] 만화가가 만화 스토리 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 스토리 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참고] 제호나 짧은 문장의 저작물성

짧은 단어나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문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고,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자 법원의 입장이다. 이를 저작물로 보호하게 된다면 짧은 단어 나 문구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게 되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제호(제목) 등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 상표권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³²⁾ 경우에 따라서는 부

정경쟁방지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³³⁾에 유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만화 제목인 ‘또복이’가 빵 상품의 이름으로 사용된 사례에서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또한 ‘크라운출판사’와 같은 출판사의 이름에 대하여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비슷하게 맥주 광고문구 “~눈으로 확인하세요”(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영화 대사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라는 문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oo백화점이 상품 판매 공간이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문구는 2009년에 발매된 앨범 ‘1984 청춘집중’이라는 음반에 쓰여 있는 문구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발매한 음반의 겔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서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작가 이외수의 트위터(twitter)글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 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트윗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는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도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트위터 글들을 무단 복제하여 전자책 파일을 만든 것 등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즉, 짧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난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음악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선율, 박자, 화음, 형식 등을 갖추어 소리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다. 연극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연극 및 무용·무연극 등 동작, 몸짓, 대사 등을 통해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만화, 삽화 등 형상이나 색채 등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

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참고판례 2 - 넥타이에 사용한 도안을 별도의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한 사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으나,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1의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0. 7. 1. 이후에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인 사실,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예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1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인정과 같이 위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참고] 캐릭터와 저작권

캐릭터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기는 하나 그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소설 속 캐릭터와 같이 형상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한다.

캐릭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캐릭터를 저작권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캐릭터의 상업적 중요성 때문에 캐릭터를 저작권 등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 모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를 그 자체로 별개의 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등 여러 저작물들의 결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도 엇갈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례는 시각적 캐릭터는 인정, 어문적 캐릭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소설 속 캐릭터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실무상으로는 캐릭터를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등 시각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캐릭터가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표지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참고판례 1 - 저작권 법리에 따른 캐릭터 보호 인정 사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

3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33)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12. 30.경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채용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참고판례 2 - 부정경쟁방지법과 캐릭터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참고판례 3 - 실존하는 동물로 만든 캐릭터의 저작권 인정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미국 디즈니 엔터프라이즈(Disney Enterprises Inc.)가 창작한 저작물인 “101마리 달마시안(Dalmatian)”에 등장하는 달마시안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개 모양을 부착한 원단을 저작권자인 위 회사로부터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음이 없이 생산,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달마시안 종의 개 101마리라는 설정과 이에 따른 101이라는 숫자 및 달마시안 무늬로 만든 디자인으로 표현된 위 회사의 저작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일반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 회사가 창작한 만화영화 속 주인공인 101마리의 달마시안 종의 개만을 연상하게 하며, 달마시안 종의 개가 원래 자연계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위 회사는 달마시안 종의 개에게 만화주인공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랑스러움과 친숙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각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참고판례 4 -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색을 반영한 캐리커처 또는 상품 등을 제작한 것이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인지

피고 제품이 위 각 드라마 속의 캐릭터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이에 의거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원고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의 위 각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하여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말하는 것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의 등장인물로부터 위와 같은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만을 따로 떼어 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이 점에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만화 캐릭터에 관한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115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은 이 사안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마. 건축저작물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다.

바. 사진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영상, 형상 등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다만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³⁴⁾고 보고 있으므로, 이런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대략 전문 사진작가가 공들여 찍은 사진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찍은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이 일상에서 찍은 이른바 스냅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반드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인용한 판례 역시 상업적 목적의 사진이 문제 된 케이스임에도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한 사진”이라는 이유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도 “술섬”의 자연경관을 촬영한 풍경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³⁵⁾ 또한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수술 사진,³⁶⁾ 피사체만 충실하게 표현된 햄 광고사진³⁷⁾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진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업적 사진이나 전문작가의 사진은 작가 등과 협의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34)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35)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36)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자 2013라346 결정 등

37)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고판례 1 -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기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고판례 2 - 풍경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 / 인터넷에서 사진을 받아 저장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이다.	
--	--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사진들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인 사진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중략)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 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	--

참고판례 3 - 풍경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에 대한 구도의 설정은 사진을 촬영한 장소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자연물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알려져 있거나 반대로 주변 환경에 따라 매우 제한되어 있어 그 장소의 선택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장소나 구도를 선택하여 그 자연물을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중략)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 대비하거나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참고판례 4 - 사진 속에 다른 저작물이 촬영된 경우 저작권침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	

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	--

사.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아. 도형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	
참고판례 1 - 도형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중략)	

이 사건 원고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 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 도안은 모두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만화 작가들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글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글꼴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법리로 처리하기 때문이다.³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글꼴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³⁹⁾ 따라서 글꼴을 똑같이 따라 그려	

38)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3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이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글꼴의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고,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예 작품 정도의 예술 작품이어야 한다.

서 사용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전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글꼴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 된 글꼴과 똑같은 글자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글자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글꼴 파일(글꼴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는지가 문제 된다. 즉, 글꼴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기재된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아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글꼴은 “글자체”라는 이름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으로 등록, 보호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자인으로 등록된 글자체의 경우에도 타자, 조판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디자인권을 적용하지 않으므로,⁴⁰⁾ 결국 저작권법 법리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실무상 글자체 문제를 디자인권 문제로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결국 글꼴 문제는 저작권법 법리 부분을 잘 이해해두어야 한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에 대하여 미술저작물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⁴¹⁾

참고판례 1 - 글꼴 파일과 프로그램 저작권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 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푯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푯값과 좌푯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인 폰토그래퍼(fontographer)에서 윤곽선 추출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래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 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푯값이 위와 같은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푯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고판례 2 - 글꼴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관련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좋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자료>발간자료>조사·연구).

40)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4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3.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은 주로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로서 다양한 창작적 협력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지를 확정하기란 매우 어렵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 그로 인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저작권법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참고 [편집저작물]
백과사전이나 문학전집, 판례집 등과 같이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한편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에 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비윤리적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사회공공의 이익이 저작권보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보호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헌법·법률·조약 등의 법령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등에 의한 의결이나 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법령이나 고시, 판례 등을 편집하거나 번역한 것,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⁴²⁾
한편, 비윤리적인 내용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판례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 판례 1 - 외국의 누드사진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고 판례 2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42) 저작권법 제7조

4.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이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자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인 저작권(저작권격권,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 창작을 위한 동기 부여, 자료 제공, 단순한 오류 수정 및 비용 제공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가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이라면 그 저작권은 법인·단체가 갖는다(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를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된다. 이러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여야 하고,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고,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작성한 개인이 저작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참고판례 1 - 업무상저작물의 인정 요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인 등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④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진 2인 이상이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분리 불가능해서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8조). 이와 달리 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결합저작물’이라고 하며, 결합저작물은 각 저작자가 단독으로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판례 1 - 만화 스토리 작가가 창작한 스토리와 만화가의 그림에 대하여 공동저작물 인정한 사례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저작권법 제2조 제21호)하고,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주관적으로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등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되지만, 공동으로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이상 그 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1인 또는 그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공동저작자가 저작권법 제48조의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족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진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관련해서 최근 판례는 형사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고판례 2 -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 행사방법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부정

구 저작권법(2011.6.30.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고] 공모전과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응모자와 공모전 주최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창작물 공모전 지침」(2020)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⁴³⁾ 이는 공정위의 2014년 공모전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의 내용과 아래의 각 근거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약관을 마련한 자가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관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관 사용자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약관법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특히 창작물 공모전에 응하는 응모자 입장에서서는 약관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 응모를 하거나 아니면 응모하지 않는 선택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약관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 일일이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공모요강이 주최측(사업자)이 여러 명의 저작자(상대방)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모전 요강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 심사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⁴⁴⁾

창작물공모전 지침 중 주요부분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이용방법·기간·횟수·장소·이용매체·이용허락의 대가 등)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입상작을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 발표 후 입상작의 저작권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권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 전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자료>발간자료>조사연구)

[참고] 저작자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 등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판례는 저작자 아닌 자와 저작자가 서로 동의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등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⁴⁵⁾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판례 1 - 저작자 허위표시의 처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7. 10. 26. 2016도16031 판결)

43) 문화체육관광부 2020. 10. 14.자 보도자료 “공모전 저작권,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로 -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발표 -”.

44) 공정거래위원회 2014. 8. 8.자 보도자료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45) 대법원 2017. 10. 26. 2016도16031 판결

5.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여 각 권리의 내용을 살펴본다.

가.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창작자 본연의 권리로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성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저작권법 규정]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대표를 정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5조).

참고판례 1 - 저작인격권 침해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 인정 사례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고판례 2 - 소유자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작품을 철거하는 것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⁴⁶⁾

작가는 특별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국가의 의뢰로 설치된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하였고, 국가도 단기간에 이를 철거할 경우 작가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벽화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위자료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이른바 “도라산 벽화” 사건)

46) 항소심 법원은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행 저작권법상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나.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1)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결국 복제권이란 시, 소설 등 어문저작물의 경우 필사·등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림이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모사,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저작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스캔, 다운로드 등을 하는 행위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판례 1 -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구별 기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 공연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권은 다시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세 가지 권리로 나뉜다.

방송은 다수의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일방향성)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송은 수신자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으로는 아직 수신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업로드 등으로 언제든지 전송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디지털 음성 송신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요청에 의해 송신된다는 점에서 전송과 비슷해 보이나, 요청하는 자가 송신 시점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방송과 비슷한 부분도 있다.

웹툰 연재 등이 대표적인 공중송신, 특히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웹툰 연재계약은 기본적으로 전송권 계약이다.

4)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전시할 수 있지만 복제물까지 전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본을 전시할 수 있으나,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참고로 전시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미술저작물 등을 올리고 이를 감상하는 등의 전시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전시가 아니라 전송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판례 1 -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이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중략)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번역본 저작물이 아닌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4468 판결)

5)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포는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되거나 대여되는 경우만을 말하므로, 다운로드 등 무형적인 전달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운로드 등은 배포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1 - 배포와 전송의 개념상 차이

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어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MP3파일을 저장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다른 이

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송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배포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3나21440)

한편 저작자가 일단 어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멸한다.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대여하는 경우 여전히 저작자의 대여권이 소멸하지 않고 인정되므로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6) 대여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여권은 저작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여권은 앞서 설명한 권리소진이론과 관련되는 권리이다. 권리소진이론에 따르면 저작물을 구입한 자는 저작물을 빌려줄 권리를 갖는데, 저작물을 구입한 자가 상업적으로 저작물을 빌려주는 경우 저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CD음반 대여점이나 만화책 대여점의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설사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이라도 별도로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권리가 대여권이다. 다만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만화책의 경우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다.

한편 대여권 규정 신설 전의 사안에는 대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⁴⁷⁾ 만화책 등의 경우에도 대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지만 창작된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있다. 즉,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별개의 저작권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의거한 것과 별개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야 한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원저작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허락을 얻어야 한다.

참고판례 1 - 2차적저작물은 별개의 저작물이다.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47)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참고판례 2 - 캐릭터는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중략)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⁴⁸⁾

48) 다만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는 다소 복잡하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6.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하나로, 특히 출판권은 전통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저작권 행사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출판권과 전자책에 대한 발행 권한인 배타적발행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가. 배타적발행권⁴⁹⁾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권리(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제외)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면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정된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물을 발행할 수 없다. 배타적발행권자는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등 저작물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계속 발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배타적발행권자가 이러한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나. 출판권⁵⁰⁾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은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내용은 배타적발행권을 준용한다.

7.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나 매개자 등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이 있다.

49) 저작권법 제57조 ~ 제62조

50) 저작권법 제63조, 제63조의2

8.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⁵¹⁾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고,⁵²⁾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⁵³⁾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⁵⁴⁾

1957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이었으나, 1987년에는 사후 50년으로, 2013년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다. 시행일과 소급 보호하지 않는 규정 등이 있어 복잡하므로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2년 12월 31일’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는 해당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51)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52)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53) 저작권법 제41조

54) 저작권법 제44조

9.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⁵⁵⁾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를 허락받은 자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⁵⁶⁾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으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하는데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⁵⁷⁾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소멸한다.⁵⁸⁾

55)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56) 저작권법 제46조

57) 저작권법 제48조

58) 저작권법 제49조

10. 저작권의 등록⁵⁹⁾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의 성명이나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나(저작권법 제10조, 무방식주의)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나 창작일 등이 추정되고, 권리변동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이나 이명·국적·주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와 공표연월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등록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된다.

11.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⁶⁰⁾

가.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권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권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의 유사 신탁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지행위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리중개의 대상 저작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래 발생할 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가 “대리중개의 대상을 권리자가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창작할 저작물 전체로 정하는 것은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여 금지됨”, “따라서, 대리중개의 대상을 권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작물 중에서 특정하여 지정하고 장래 창작할 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 이후 별도의 대리중개 계약을 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한편, ‘저작권대리중개’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음악, 영상, 어문, 사진, 미술, 기타 분야의 대리중개계약서 및 이용허락계약서)도 있으니 이를 함께 참고하여 사용해도 좋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대리중개계약서(권리자와 대리중개업자 간의 계약)와 이용허락계약서(권리자, 대리중개업자, 이용자 3인 간의 계약)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 누리집>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59) 저작권법 제53조

60) 저작권법 제105조 ~ 제111조

12. 저작재산권 제한

저작재산권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반 공중의 이용이나 공공의 이익과 충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무한정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하여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즉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공정이용의 구체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⁶¹⁾

-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복제할 수 있다.
-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이용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⑥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이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 ⑧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⁶²⁾
- ⑨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다.
- ⑩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 ⑪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 ⑫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⑬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 ⑭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한편, 위와 같이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조각이나 회화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⑮ 컴퓨터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 ⑯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촬영 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⑱ 2011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신설되었다.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나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를 별도로 나열한 후, 또다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포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나열된 사례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권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관련판례 1 - 공정이용 범위 적용의 한계와 사적 복제의 의미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비로소 신설되었다)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정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

61) 저작권법 제23조 ~ 제35조의5
62) 저작권법 제30조. 사적복제인 경우에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집에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참고] 패러디의 법리

패러디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도 공정이용 법리에서 찾을 수 있다. 패러디에 대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 법리로 접근하는 입장과 공정이용 법리로 접근하는 입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공정이용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⁶³⁾ 다만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패러디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좁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패러디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못하였으나, 법원이 대체로 미국의 법원이 인정하는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및 풍자 여부

②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④ 이용된 방법과 형태

⑤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⑥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특히 눈여겨볼 것은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풍자나 비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러디의 풍자 대상이 사회문제 등인 경우에는 적법한 패러디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패러디를 한 경우에도 적법한 패러디로 인정될 수 없다.

참조판례 1 - 패러디 보호의 한계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낼 뿐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것이지 해당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업적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사회적 가치 저하나 잠재적 수요하락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63) 우리나라에는 아직 패러디 관련 판례가 거의 없으나, 패러디에 대한 가장 대표적 사건인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 1837 결정(이른바 ‘컴패콤 사건’)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법리로 패러디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침해란 권원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격권 침해, 저작재산권 침해, 출판권의 침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저작재산권의 침해 형태이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표현과 침해 저작물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 저작물을 만든 자가 원저작물을 도용할 의도가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의거성의 경우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침해자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즉 원저작물을 도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었다거나, 원저작물과 침해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간접사실로 추정될 수 있다. ⁶⁴⁾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⁶⁵⁾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알고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참고판례 1 -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참고판례 2 -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에 대한 판단 사례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대하여
덕만공주의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금관의 꽃 또는 동로마 등 서역의 문화와 사상의 습득,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구도,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애정관계, 미실 세력으로 인한 진평왕의 무력함은 모두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이 사건 대본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거나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의 주제, 인물의 성격과 역할, 인물 사이의 관계, 줄거리, 구성 역시 양 작품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65) 저작권법 제124조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대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드라마와 이 사건 대본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참고] 필수 장면 이론(Scenes à faire doctrine)
필수 장면 이론이란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특정한 주제나 내용(아이디어)을 표현하는데 있어 전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우리 대법원도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판례 1 - 역사적 사실을 사용한 저작물에서 필수 장면 이론 법리를 적용한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꿈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꿈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동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동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뜰에 관한 표현은 동틀뜰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제,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참고] 합체 이론(Merger doctrine)
합체 이론이란 아이디어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다고 보아 저작권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론이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저작물의 복제행위는 아이디어의 복제이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판례 1 - 야구를 소재로 하는 게임물의 특성상 캐릭터 모습의 표현 형식이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판례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이와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고]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인터넷 전송이 만화의 가장 중요한 소비 방식이 되면서, 만화를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만화의 경우도 인터넷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웹페이지를 다른 웹페이지에 연결하는 연결점을 인터넷 링크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웹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있는 글자 또는 그림을 클릭하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인데, 웹페이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링크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링크는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등으로 나뉜다. 단순 링크(simple link)는 단지 원하는 사이트의 메인 또는 초기 홈페이지 연결만 하는 것이고, 직접 링크(deep link)는 한 단계 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건너뛰어 원하는 사이트의 원하는 웹페이지 등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frame link)는 링크를 한 웹페이지 화면에 아예 특정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내에 링크 대상 웹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의 내용(음악 파일이면 음악, 동영상 파일이면 동영상 등)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링크를 말한다. 인터넷 링크의 경우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송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상 전송권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판례는 각 링크의 종류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판례는 단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링크 대상 홈페이지 자체에 저작권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 링크 대상 홈페이지의 저작권 위반을 방조, 즉 도와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웹페이지가 아닌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링크하는 경우, 그 리소스의 관리자가 원래 관리자가 아니라 링크를 한 웹페이지 소유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레임 또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링크 대상 홈페이지나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본다.

참고판례 1 - 단순한 인터넷 링크 설정은 복제권 침해가 아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위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참조판례 2 - 심층링크나 직접링크는 복제 및 전송이 아니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호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 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위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고판례 3 - 검색서비스에서 썸네일 이미지와 이에 대한 상세보기나 슬라이드 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릭하면 각 출처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게시하였더라도 전송권 침해가 아니다.

피고의 회원들이 피고가 제공한 전자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섬’ 등 게시판에 원고의 허락 없이 올린 이 사건 이미지들에 대한 복제권 등을 피고가 직접 침해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적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봐도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회원들이 위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올리면, 그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하여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이용자가 피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지 검색서비스의 검색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목록화하여 보여 주고, 이용자가 다시 특정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click)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이미지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하여 보여 주며, 위 이미지의 아래에는 그 제목, 글쓴이, 파일이름, 출처 등을 보여 주는 점, 여기서 이용자가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기능을 선택하면 각 썸네일 이미지의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며, 각 이미지의 아래에 출처 및 그 인터넷 주소(URL), 이미지가 위치한 인터넷 주소 등이 표시되고, 위 상세보기 및 ‘슬라이드 뷰’ 또는 ‘슬라이드 쇼’ 화면에 나타난 각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각 출처 웹페이지로 링크(link)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자를 특정 웹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는 방식 외에, 동일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후자의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표시된 웹사이트 의 주소가 변하지 않은 채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 등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바, 이처럼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 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앞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이를 축소, 변환한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참고판례 4 - 임베디드 링크를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로 본 사례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 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 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 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甲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 甲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 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 자에게 있는 점, 甲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 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 나,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 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 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 하여야 하는 점,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 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 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 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甲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 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 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 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예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 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나. 조정 및 감정

분쟁의 조정은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⁶⁶⁾ 별도의 신청비용이 발생하나, 민사소송에 비해서 는 매우 저렴하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⁶⁷⁾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⁶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의 경우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저작물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 램 저작권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이나 수사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만 감정을 할 수 있으므로, 만화 등의 저 작권 분쟁에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여야 한다.⁶⁹⁾

[참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정 당한 권리 없이 이러한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02 조~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참조).

다. 민사상 구제수단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 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는 권리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는 권리침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침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침해의 정지 청구는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받아 침해행위를 정지시 킬 수 있어 실질적인 구제수단이다.⁷⁰⁾

또한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 상을 청구할 때 권리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서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재산권 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이는 최소배상금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실제 손 해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⁷¹⁾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행 위에 침해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저작권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정하 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천만원)

66) 저작권법 제114조의2

67)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68) 저작권법 제117조

69) 저작권법 제119조

70) 저작권법 제123조

71) 저작권법 제125조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⁷²⁾

만약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할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⁷³⁾ 그러나 아무런 증거 없이 법원이 손해액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손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청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⁷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명예회복의 위한 조치로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판결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⁷⁵⁾

민사상 구제수단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의 존재, 저작권의 침해사실과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입증 책임 문제는 실제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특히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판례 1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은 작품성과 대중 인기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자로서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이에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뉠대로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등 참조). 이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반드시 저작권침해 행위의 이전의 것이어야 하거나 2회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라. 형사상 구제수단⁷⁶⁾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공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저작권침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친고죄).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⁷⁷⁾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 취소 의사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등은 몰수할 수 있다.⁷⁸⁾

한편,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에 의해 경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도 있다.

72) 저작권법 제125조의2

73) 저작권법 제126조

74) 저작권법 제129조

75) 저작권법 제127조

76) 저작권법 제136조~제142조

77) 저작권법 제140조

78) 저작권법 제139조



만화·웹툰 분야 공정환경 조성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 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에 포함